
2021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2020. 11.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실)

목 차

I. 총괄	1
II. 재난·사고 관리대책	16
1. 총괄	16
2. 주관유형	23
1) 가축전염병	23
2) 농업사고	30
3. 협조유형	33
1) 풍수해, 지진피해	33
2) 가뭄	36
3) 폭염	40
4) 식품사고	42
4. 공통	46
1) 재난사고 복구	46
III. 재정투자계획	48
IV. 행정사항	51
◇ 부록	52~89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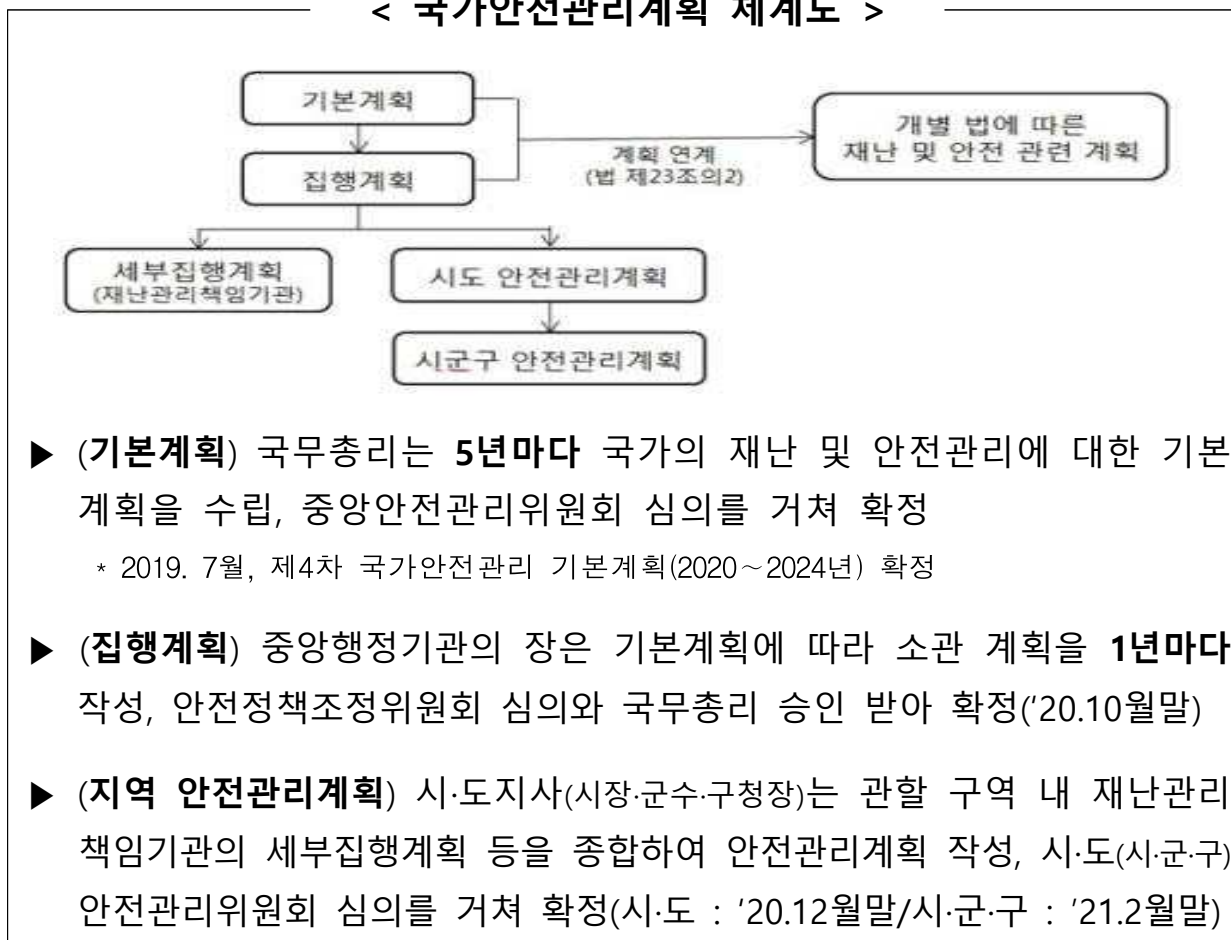
□ 법적근거

- 「재난안전기본법」 제23조,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 수립목적 및 체계

-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 (체계) 기본계획(국무총리), 집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세부집행계획(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안전관리계획(시·도,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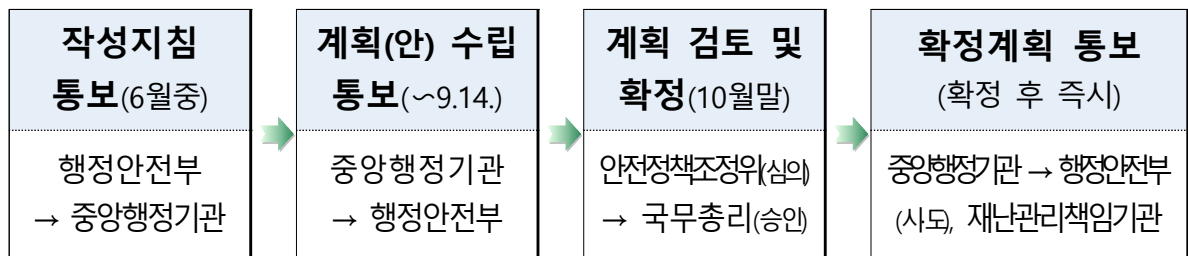
< 국가안전관리계획 체계도 >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절차

-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6월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9.14.)
-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 절차 등 일괄 추진(10월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즉시)

* 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통보



< 수립절차 관련 규정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확정된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10월말)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 다만, 중앙행정기관별 효율적인 집행계획 작성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각 기관의 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등 일괄 추진

□ 수립분야

- (주관대책) 가축전염병, 저수지사고, 농업사고
- (협조대책) 풍수해, 가뭄, 지진, 산불 등
- (공통) 국민안전교육, 재난구호 및 복구, 재난관리체계 등

2. 현 황

□ 주요기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난·안전관리 정책기획·조정, 안전점검 추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난관리 정책·제도 수립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
- 재난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국가 재난수준 가축질병 방역
-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풍수해·가뭄·지진 등 농업재해대책 추진
- 농축산식품 안전성 조사·관리
-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풍수해·가뭄 등 농업재해대책 추진
- 생산·유통단계 농산물 중 유해물질(농약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 하여 부적합품 유통 사전차단 등 품질관리 및 농기계 사고 안전대비
- 안전한 농산물 생산,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농업인 등 교육·홍보 및 지도
-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 피해 유형별 관리주체, 안전담당관 업무수행원칙

유 형			주 관 부 서	협 조 · 지 원 부 서
주 관	가축 전염병	구제역	구제역방역과	방역정책과 축산경영과 검역정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ASF		
		AI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방역정책과 축산경영과 검역정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저수지 사고		농업기반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사고		재해보험정책과	농촌여성정책팀 농기자재정책팀등
협 조	시 설 물 재 난	배수장 등 수리·용수 관련 시설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광시설 (농촌숙박시설)	농촌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다중이용시설 (농산물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등)	유통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등
		경마공원 등 경마 관련시설	축산정책과	한국마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풍수해		재해보험정책과	식량산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축산경영과 간척지농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폭 염		재해보험정책과	축산경영과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등
	한 파			
	대 설			
	가 물		농업기반과	재해보험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 진		농업기반과	재해보험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 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산 불		농촌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등	
	화 산		비상안전기획관실	재해보험정책과 등	
	감염병 (코로나,사스,메르스 등)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방사능 재난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식품사고	농산물			
		축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미세먼지, 황사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정책과 축산환경자원과 농기자재정책팀 등	
붉은 불개미		검역정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 통	국민안전교육 (가축전염병대처)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재난 구호 및 복구	농업재해 보험	재해보험정책과	간척지농업과 축산경영과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등	
		재보험금	재해보험정책과		
		재해대책비	재해보험정책과		
	재난 관리 체계	계획수립 (기본계획(안), 집행계획 등)		비상안전기획관실	계획수립관련 유형별 주관 및 협조부서
		훈련	총 괄	비상안전기획관실	가축질병, 저수지 사고 관련 주관 및 협조부서
			가축 전염병	가축전염병 주관부서	가축전염병 협조부서
			저수지 사고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평가	재난 관리	비상안전기획관실	방역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업기반과 등
			재난 안전 예산 사업	비상안전기획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방역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업기반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재난관리 조직·인력보강		행정혁신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재난 언론대응		홍보담당관실	재난유형별 주관 및 협조부서	

■ 재난관리 유형별 주관 및 협조부서 업무수행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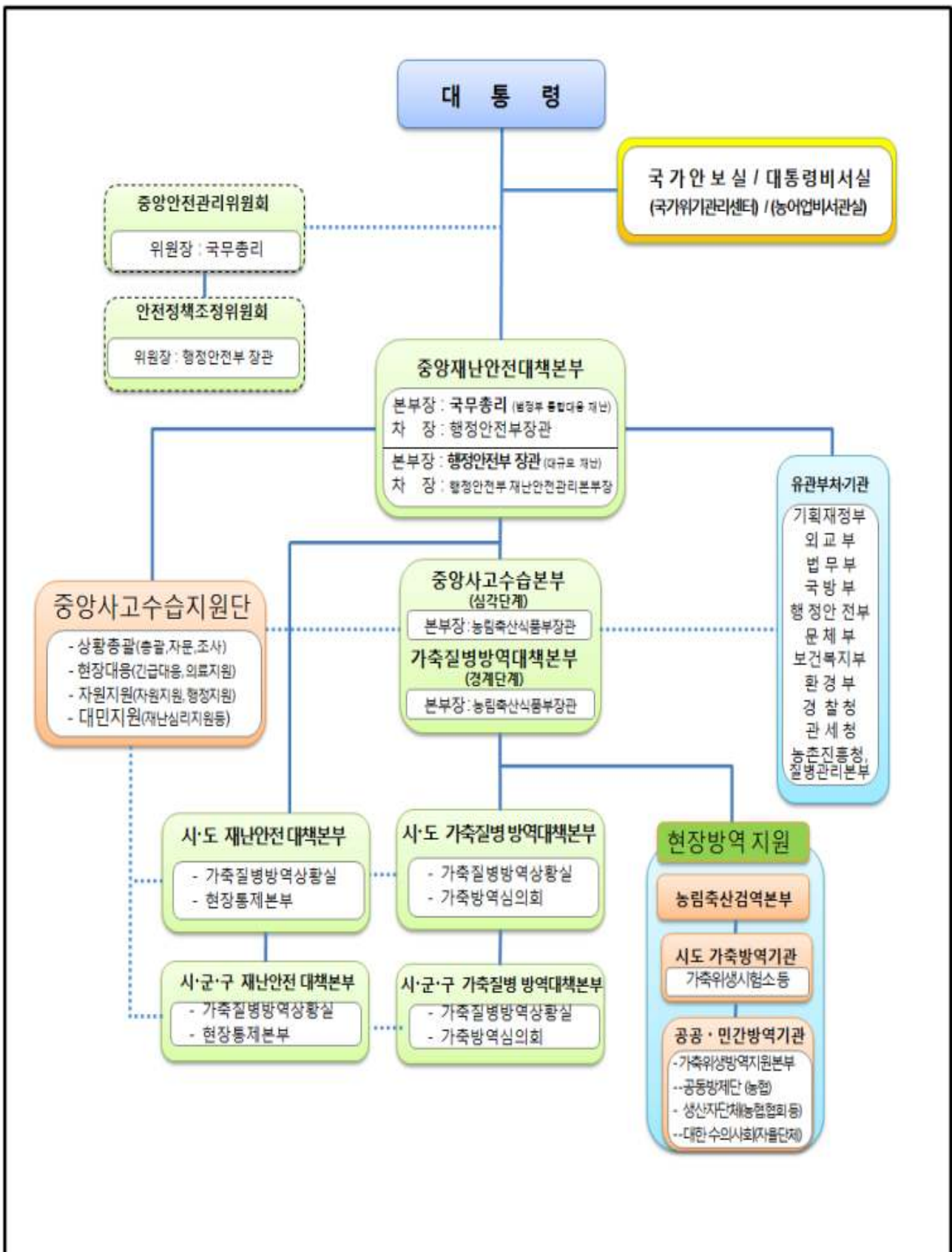
- ① 상기 명시된 재난안전관리 주관부서는 해당유형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협조 및 지원부서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②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안전기획관실은 우선 초동조치(상황보고 및 전파, 주관부서 지정 건의)를 하고, 장관 (차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안전책임관 및 안전담당관을 임명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수행 여건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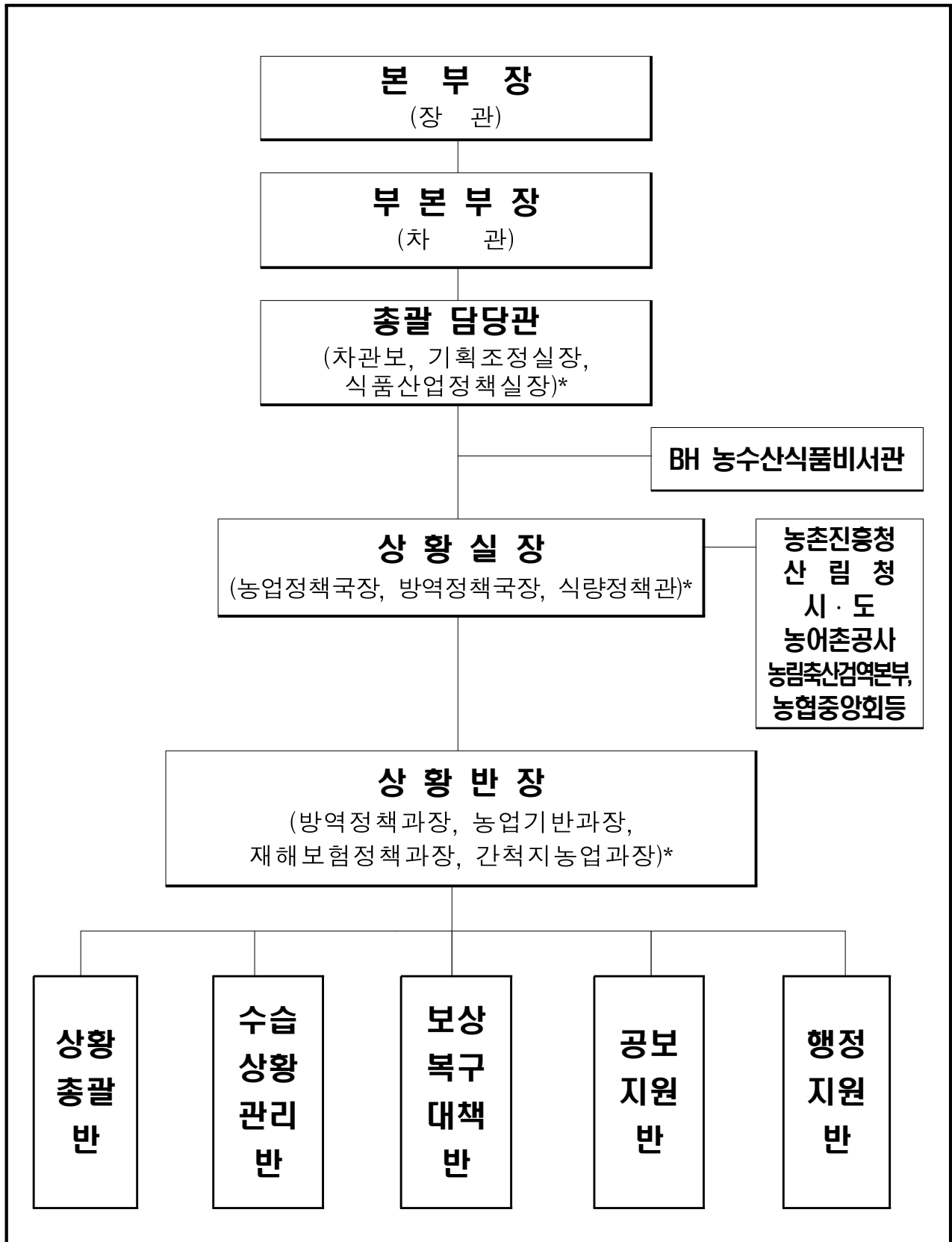
- ① 안전책임관(비상안전기획관)은 해당 유형별 주관·협조·지원 부서와 안전담당관(과장)의 재난안전업무를 통제한다.
- ② 주관 및 협조부서는 안전담당관(여러명 가능, 대표자는 해당과 과장)을 임명하여 운용하고, 재난안전 관련 업무수행 내용을 과별 사무분장에 명시 하며, 각종 평가(평정, 성과 등) 시 관련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 ③ 안전담당관은 해당분야 재난안전사고가 발생 및 발생우려 시 해당분야 에 대한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관련된 재난 안전 교육·훈련, 관련된 재난안전 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평가, 안전성 예방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근거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안전책임관) 및 시행령 제85조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 재난 · 사고 관리체계



□ 농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도



* 재난 사고유형에 따라 해당 담당관(총괄담당관, 상황실장, 상황반장)이 임무수행

3. 성과 및 반성

□ 추진성과

- '19.1월 구제역 3건이 발생하였으나, 역대 최단기간 내 확산 차단* 및 철저한 위험요인 관리로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

* 발생기간/건수: ('15) 147일간/185건 → ('16) 45/21 → ('17) 9/9 → ('18) 7/2 → ('19) 4/3

- 강력한 차단 방역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최소화

* '19.9.16.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첫 발생, 10.9. 경기 연천 이후 미발생 중(총 14건 발생)

- 검역본부 특별방역단, 중앙기동점검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신속한 방역지원 및 현장점검으로 방역사각지대 최소화

- 「'20년 동절기 대비 AI 방역 추진 계획('20.5월)」에 따라 고병원성 AI 위험요인 관리 및 차단방역 의식·역량 제고 추진 중

- (위험요인 관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확대('20.8월~), 가금농가 일제점검('20.4월~), 국내외 야생조류 AI 예찰 강화
- (방역 역량 제고) 협업 기관·단체 및 전문가 그룹과 협업체계 구축, 온라인 교육 및 농가 자체 방역점검, 가상방역훈련(CPX) 추진
- (방역체질 개선) 오리농가별 위험도 평가·사육제한 추진, AI 상시 예찰·검사 계획 보완, 제도(법령, SOP 등) 개선 등

- AI·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위한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관리

- 축산관계자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입국 시 의무 신고('17.6.3. 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국 현황 등 정보공개 대상에 ASF 추가('18.5.1. 시행)

- ASF 유입방지를 위해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상향('19.6.1. 시행)

* (기존) 1차 10만원 / 2차 50 / 3차 100 → (개정) 발생국은 500, 750, 1,000 / 그 외 100, 300, 500

- 공항만 시설관리자·운송인 여행객 대상 검역안내 의무화('20.6.11. 시행)
 - *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검역물 신고의무 등 승무원·승객에게 안내
- 검역 여건 변화 반영 동·축산물 검역제도의 합리적 개선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분유 등 살균품목 증명서 면제 등 수입검역 절차 및 관리 방법 마련을 위해 고시 개정('19.10.)
- 검역 여건 변화 반영 동·축산물 검역제도의 합리적 개선
- 생산단계 작업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지속
 - 축산식품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축장·집유장 평가
 -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을 실시간 조회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계도·점검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미트와치) 관리 및 이력정보 제공
 - 2020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공공시스템 부분 수상(매경미디어그룹)
- 생산단계 유해물질 사전차단, 안전기준 부적합 농산물 유통차단을 통한 농산물 안전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
 - 부적합 다발품목 및 취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한 부적합 농산물 시중 유통 사전차단(고발, 폐기, 출하연기 등)
 - * '19년 안전성조사 60,988건 중 적합률 98.8%(전년 98.7% 대비 0.1% 상승)
 - 수출 농산물 맞춤형 검사 지원, 생산자단체 개설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불제 이행점검 등 정책사업 연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지원
 - * 수출 4,843건, 쌀직불제 2,300, 인증 15,190, 로컬푸드 1,505, 공동브랜드 2,000 등 28,303건 조사, 부적합 142건은 폐기·출하연기 등 조치
- PLS제도 도입에 따른 농업인 대상 현장 교육·지도를 통해 농산물 부적합률이 전년 대비 0.1% 감소
 - * PLS(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인 0.01mg/kg(ppm)으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하는 제도
 -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 및 부적합품의 유통차단으로 농산물조사 결과 전년대비 부적합률 0.1% 감소를 통해 대국민 먹거리 안전도 제고

* 부적합률 : ('98) 7.0 → ('06) 2.7 → ('11) 1.8% → ('18) 1.3% → ('19) 1.2%

** 농업인 교육(162,808명) : 집합교육(144,429명), 등록제한 농약 검출농가 교육(16,595명), 농약검출 농가 특별교육(1,784)

○ 영농단계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을 통해 '19년 농업
가뭄피해 'ZERO' 달성('14년 이후 처음)

* 가뭄피해면적(ha) : ('15) 5,978 → ('16) 13,247 → ('17) 13,446 → ('18) 18,398

▶ 기상상황: '19년 강수량은 1,184mm로 평년(1,308mm)의 91% 수준이었으나,
물 수요가 많은 8월 말까지 강수량은 710mm로 평년(1,024mm)의 69%
· 특히, 중부지방(인천·경기·강원·충남)은 평년의 52~61% 수준의 강우에 그침

- 사전대비: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15~)를 통해 농업·생활·공업 등
용수별 가뭄상황을 공유(매주)하고 가뭄 예·경보 실시(매월)

* 행안부 주관, 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 등 관계부처 참여

· 평년 대비 70% 강우시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27개 저수지에
사전 양수저류(8,752천톤, '19.2~6월)

- 영농대응: '15~'17년 연속 가뭄 당시 추진한 수계간 용수공급
시설 가동 등을 통해 국지적 강수 부족에 대처

· 한강도수로*, 금강도수로** 가동 등 인천 및 충남 강수부족 대응

* 김포~강화 '16.6월 설치(3~9월 400만톤 공급) ** 금강~예당지 '17.12월 설치(7월 87만톤 공급)

· 수계연결 추진 중인 경기 안성 금광지·마둔지 등 국지적 강수부족
지역은 하천수 양수(금광지 132천m³, 마둔지 286천m³), 간단관개 등 추진

· 강원 강릉(안반데기, '17.5)·태백(귀네미, '18.6)·정선(방제리, '18.6) 등 고랭지
채소주산단지(376ha) 용수공급시설 활용 등 안정적 용수공급 지원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19.11) 및 시행계획('19.6)마련

- 안전재해예방 실행·환류체계 정비로 예방기반 구축, 안전인식 등 확산으로
안전한 농업작업 환경조성을 통한 농업인이 체감하는 안전한 일터 제공

○ 여름, 겨울철 주요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신속
대응을 위하여 재난대책 기간 및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여름) 매년 6.15. ~ 10.15., (겨울) 매년 12.10. ~ 익년 3.15.
- * 대책기간 중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관련근거 : 농식품부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반 성

- AI, 구제역, ASF 국내 지속 발생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의 차단방역 의식 부족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 필요
- 지속적인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관리에도 불구하고 살충제 계란 검출('17) 등 식품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관계기관의 농업인 관련 자료공유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발생
 - 협조적인 농가 위주의 안전성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조사대상자 선정의 당위성 부족에 따른 공정성 확보 필요성 대두
 - * 농업경영체 정보를 안전성조사 대상선정에 활용 추진('20년~)
- 매년 농업작업재해,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근로자, 여성 및 신규 농업종사자, 가축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 미흡
- 저수지 등 관련시설에 재난안전예산을 반영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보수·보강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저수지가 붕괴되는 현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 미흡
- 중앙재난안전평가, 재난안전사업예산평가, 가축질병분야 국민안전교육 평가 등에 대한 수검결과 후속조치 미흡
- 재난관리 업무수행간 재난안전 유형별로 주관 및 협조부서, 안전책임 담당자 등이 불분명하여 재난관리 업무수행 시,
 - 부서별 갈등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에 의한 재난안전관리 업무수행체계 구축 필요

4. 여건 및 전망

□ '17년 이후 가축질병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새로운 가축질병이 유입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외부 여건) 최근 유럽·몽골·대만 등 주변국을 비롯한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겨울철 철새를 통한 AI 바이러스 유입 위험 고조

* (전세계) '19.상 149건 → '20.상 483건(3.2배) / (유럽) '19.상 10건 → '20.상 331건(33배)

* (주변국; 중국·대만·베트남 등) '19.상 52건 → '20.상 128건(2.5배)

- (국내 여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농장 유입 위험도 증대되고, 구제역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일부 농가 지속 확인

* '19.10.2일 연천 최초 발생 이후 '20.8월 현재까지 7개 시군에서 약 700건 발생

□ 재난형 질병(ASF, 구제역, AI)의 발생·유입 위험 상존에 따른 사전 예방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주변국 ASF, 구제역, AI 상시 발생 등에 따른 특별방역단, 중앙 기동점검반 등 지속적인 방역지원 필요

□ 특송물품 증가 등 국제물류 변화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필요

- 외국인 해외여행객 증가, 해외직구입 특송화물 증가 등 국제물류 흐름 변화에 따른 수입축산물 수입경로 다변화 및 주변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확산에 따른 특별 검역대책 추진 필요

□ EU 쇠고기 수입허용 요구 및 한-중미 FTA 발효, RCEP·CP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추진 등 새로운 검역환경 대응

- 악성 가축전염병(HPAI, ASF 등) 발생 급증으로 국가별 지역화 요청 증가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위생관리 강화 필요

- 계란 살충제 검출(17) 사태 이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 (농장·도축장·집유장)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성 검사 강화 필요

□ PLS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 PLS제도 도입('19년도)에 따른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농가 대상 농약안전사용 사전 지도 등 교육 및 홍보 지속 추진

□ [가뭄] 최근 30년간 연 강수량 감소 추세. 특히, 최근 10년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가뭄 우려 상존

* 최근 10년 평균은 1,264.2mm로 최근 30년(1305.0mm) 보다도 40.8mm 부족



- 강수 감소, 집중호우 증가 등 강수 활용 가능성은 저하하는 반면,
 - 수리안전답율 62%, 받기반정비율 67% 등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는 상당수 존재

□ 농업근로자, 여성 및 신규 농업종사자 교육·홍보 강화 필요

- 상대적으로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현장 밀착형 홍보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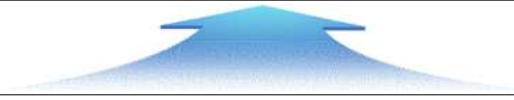
5. 추진방향

비전

재해 없는 농림축산식품산업 육성

목표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공급**



추
진
전략

안전의식 제고	· 재난전문교육, 워크숍 개최 등 재난관계자 역량 강화 ·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참여 홍보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비	· 위험요인 사전차단, 예방사업의 투자 확대로 피해 최소화 · 해외 가축전염병 동향 파악 및 국경검역 강화 · 해빙기, 장마, 동절기 등 시기별 현장점검 강화 · 축산농가의 주체별 방역활동 강화 전개 · 기뿔 우려지역 농촌응수개발 확대 및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추진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대응 체계 구축	· 재난유형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상호공조체계 강화 · 실질적인 재난훈련 추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훈련 활성화 ·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긴급방역대책 추진 · 신속한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위한 ICT방역시스템 구축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 노후 수리시설·방조제 적기 보수·보강 실시 · 내실 있는 안전점검 및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내실화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관리 ·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강화 · ICT융복합시스템 구축 등 첨단생산기술개발 · 축산물HACCP지원 강화 및 축산식품안전관리 강화

II

재난·사고 관리대책

1. 총괄

□ 주요 추진대책

○ 주관유형

유형	사업명	주요추진대책
가축전염병	동축산물검역검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대책 및 동·축산물 수입검역 철저
	가축방역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진단액 생산·공급, 병성감정, 혈청검사, 항원검사 등 세부사업 추진
	가축위생방역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시료 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추진
	가축방역대응지원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예방접종, 검진, 혈청검사·병성감정 등 세부사업 추진
	가축사체처리지원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조성된 가축 살처분 매물지를 친환경적 방법으로 발굴·소멸함으로써 가축질병 확산 및 환경오염 방지
	가축백신지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
	살처분보상금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금 지급
농업사고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저수지 사고는 재난기본법령 상 우리부가 주관하여 대응해야 하는 주관유형에 속하나, 풍수해 및 가뭄유형의 대책과 중복되므로 주요대책 및 세부내용은 협조유형 항목에

통합하여 기술하였음.

○ 협조유형

유 형	사업명	주요추진대책
풍수해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당, 배수갑문)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 능력 향상 및 재해예방 도모
	배수개선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및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노후·파손 등으로 태풍·해일·지진 등에 취약한 국가지방관리 방조제를 보수·보강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재해예방 도모
가뭄	수리시설개보수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 기반 구축
	수리시설유지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운영·관리 및 점검·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예방
	농촌용수개발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공급
	가뭄대비용수개발	가뭄발생지역에 용수대책비 긴급지원 및 가뭄취약 지역에 대한 항구적 용수원개발 지원을 통해 농작물 가뭄피해 최소화 도모
식품사고	축산식품 안전관리	생산단계 축산물안전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입 축산물 유통이력제 관리로 유통질서 확립
	축산물HACCP지원	축산농장 HACCP 인증 및 관리 강화
	농산물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상습 위반 농가를 파악 현장 밀착형 안전 관리 체제 강화 -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축산물위생안전 검사운영	축산물 안전관리의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

○ 공통

유 형	사업명	주요추진대책
재난 구호 및 복구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가축 피해를 보험 원리를 이용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재보험금	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재해대책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및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시, 복구소요액의 일부를 농업인 및 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재해대책비(용자)	
재난안전 관리체계	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재난 관리를 위해 관련 기능이 통합된 재난안전 관련 계획 (집행계획, 훈련계획 등)을 발전
	재난안전훈련	가축전염병, 저수지 사고분야 등에 대한 기능이 통합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등에 대비하여 농림식품분야 재난안전 대응태세 유지 여건조성
	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중앙평가에 주관 및 협조 부서가 통합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안전 대응태세 유지, 중앙평가지 우수부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재난안전예산 사업평가	재난안전예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중앙평가를 통해서 재난안전분야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게 유도하여, 미흡평가를 최소화하고, 우수평가를 받게 하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증액여건 조정
	재난관리조직· 인력보강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비상안전기획실 등)에 대한 조직진 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스템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 보장

□ 주요 성과지표 (예산사업분야 위주로 평가목표 설정)

부문	유형	사업명	성과목표	'21년 목표
주관	가축전염병	동축산물검역검사	수입 동·축산물 검역 불합격품 검색 비율(%)	44.0%
		가축방역	진단액 공급 가축전염병의 감소율(%)	2.5%
		가축위생방역지원	구제역(소) 백신 항체양성율(%)	96%
		가축방역대응지원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율(%)	0.34%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율(%)	95%
		가축백신지원	구제역(소, 돼지) 백신 항체양성률(%)	82.5%
		살처분보상금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율(%)	0.34%
	농업사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가입률	66.5%
	가뭄	수리시설개보수	수리시설개보수율(%)	84.8%
			용수절감률(%)	64.8%
		수리시설유지관리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수혜면적 대비 가뭄면적 비율(%)	1.25%
		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 급수율(%)	83.4%
		가뭄대비용수개발	가뭄발생피해 방지율(%)	94.0%
협조	풍수해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재해위험 예방율(%)	85.0%
		배수개선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율(%)	65.2%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방조제 개보수 완료지역 염해피해 해소율(%)	100%
	식품사고	축산식품 안전관리	도축장,집유장 감시 단속 비율	43.8%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활용 증가율	9.4%
		축산물HACCP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정률(%)	92.0%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적합률(%)	98.0%
		축산물위생안전 검사운영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적합율(%)	99.0%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35.0%
공통	재난 구호 및 복구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36.0%
		재보험금	재보험금 적기지급률	100%
		재해대책비	농업재해 사후복구 지원 강화	100%
		재해대책비(융자)	농업재해 사후복구 지원 강화	100%

□ 관계법령, 규정 등 제·개정 현황

부문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가축 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등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닭, 오리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 매몰지의 관리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신고 절차를 정함 ◦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 ◦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함

부문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 '19.9.16. 발생한 ASF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6개월 이후 생계안정자금 추가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농어업 사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협조	식품 사고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 농산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인 경우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호) ◦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합리적으로 변경 및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기준적용방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7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 농산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농업인의 편의향상을 위해 시료수거 내역서 서명절차 간소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개정의견 제출)
	가뭄	농어촌정비법	◦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용수 공급현황을 실태조사 하도록 규정(법 개정, '20.2.)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규정(시행규칙, '20.8)
공통	재난 사고 복구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경영안전을 도모,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 규정

□ 재정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부문	유형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2,181,155	2,132,512	2,119,386	2,616,239	2,539,081	2,578,401	2,997,525	3,172,288	3,548,234
주관	가축 전염병	1,426,290	212,603	249,077	270,414	355,365	338,831	367,756	381,651	412,051
	농업 사고	360,472	59,295	59,525	71,202	83,415	87,035	83,415	83,415	83,415
협조	풍수해	1,842,801	356,900	357,690	342,213	385,499	400,499	470,487	508,869	549,242
	가뭄	5,276,879	1,047,470	1,015,619	1,069,918	1,056,843	1,087,029	1,140,241	1,202,708	1,220,457
	식품 사고	229,349	38,912	47,865	45,091	49,854	47,627	49,791	51,037	52,062
공통	재난구호 및 복구	3,045,364	417,332	389,610	817,401	608,105	617,380	885,835	944,608	1,231,007

* 재정투자 세부내역 50p 참조

2. 주관유형

1) 가축전염병

가. 가축전염병 피해현황

- 구제역·ASF·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국내 발생 사례

(단위: 건, 백만원, 명)

구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799	817	903	823	781	669
재산피해	114,773	90,295	67,766	231,325	79,616	104,865

* 출처: 방역정책국('19.12.31.) / 가축전염병(14종) 발생건수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현황

- **(구제역)** '19.1월 안성·충주 발생 시 신속하게 전국 긴급백신을 실시하고 군제독차량, 과수용 농약살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역대 최단기간(4일) 내 마무리

* 발생건수(기간): ('14~'15) 185건(147일) → ('16) 21건(45일) → ('17) 9(9일) → ('18) 2(7일) → ('19) 3(4일)

- **(ASF)** '19.9.16일 파주의 사육돼지에서 최초 발생 후 4개 시군에서 14건 발생하였으나, 강력한 방역조치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

* 19년 ASF 살처분/재정소요액: 364천두/1,327억원

- **(AI)** AI는 '14년부터 매년 동절기에 발생하였으나, 소독강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 등으로 '18.3.17.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미발생

* 살처분/재정: ('16/'17) 3,807만마리/3,621억원 → ('17/'18) 654만마리/ 827억원
→ 이후 미발생

- 주변국의 고병원성 AI 발생 급증과 과거 국내 AI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상시 방역관리와 더불어 철새가 도래하는 동절기 대비 필요

○ 과거 주요 피해현황

- 구제역

연 도	피 해 현 황	비고
2010~2011	75개 시·군, 405천두 살처분(재정소요 3조원)	
2014~2015	33개 시·군, 174천두 살처분(재정소요 655억원)	
2016	6개 시·군, 33천두 살처분(재정소요 80억원)	
2017	3개 시·군 1,392두 살처분(재정소요 98억원)	
2018	1개 시·군 11,726두 살처분(재정소요 42억원)	
2019	2개 시·군, 2,272두 살처분(재정소요 126억원)	

- 고병원성 AI

연도	피 해 현 황	비고
2010~2011	25개 시·군, 6,473천수 살처분(재정소요 807억원)	
2014~2015	19개 시·군, 24,772천수 살처분(재정소요 3,364억원)	
2016~2017	56개 시·군, 38,076천수 살처분(재정소요 3,621억원)	
2017~2018	15개 시·군, 6,539천수 살처분(재정소요 827억원)	

- ASF

연 도	피 해 현 황	비고
2019	4개 시·군, 364천두 살처분(재정소요 1,327억원)	

나. 원인분석

○ (국경검역)

위험요인	대책	핵심 사업
▶ 중국 등 주변국 ASF 확산 및 발생국 여행객 휴대축산물 검사 결과 바이러스 지속 검출 및 야생멧돼지 지속 발생 ▶ '14년 이후 매년 구제역 발생 및 새로운 혈청형 발생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AI 상시 발생 ▶ 주변국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 해외직구 등 수입축산물 수입경로 다변화	·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ASF 담당관제, 중앙기동점검반을 활용하여 전국 양돈농가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연중 상시 취약분야별 집중관리 · 방역취약시설 및 사각지대 중앙기동점검반 활용 AI 예찰정보, 해외발생정보 등 위험정보 신속전파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적 국경검역 강화 · 외국인 여행객 대상 국경검역 강화 · 국가간 신속한 검역 정보 전달 및 paperless 전자검역 증명서 사용 확대로 위조방지	· 가축질병 진단액 생산 및 공급 - 소, 닭, 돼지 등 진단키트 · 가축질병 긴급예방약 구입 및 생산 - 구제역 항원백, AI항원백, 공수병 예방약 등 · 가축질병 혈청검사 및 항원 검사, 병성감정 실시 · 검역보조 인력 운영(112명) - 공항만·탐지견관리 등 · 제2외국어 통역 및 검역 X-ray 장비 구축 확대(8대) ('19년 26명 → '20년 114명) · 한뉴 전자검역증 교환 시범 운영 실시 ('16.12월 구축, '17.1월~운영)

- (구제역) 조기 종식 성과는 있었으나 감염항체(NSP) 검출농장,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 확인
 - 매년 감염항체 검출 농가가 확인되어 바이러스 순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발생 초기에 인접지역까지 분뇨이동 관리 필요
 - * 감염항체 검출건수 : ('16) 180건 → ('17) 34 → ('18) 16 → ('19) 20
 - * 감염항체 검출 시 인근 500m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발생지역은 분뇨이동 금지, 인접지역은 분뇨운반차량의 1일 1농장 운행 등 관리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19.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강도 높은 초기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나,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 추진 필요
 - 야생멧돼지와 환경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어 농장으로 전파 차단을 위한 접경지역 차량·사람·매개체 차단 필요

다. 관련계획 및 규정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종합대책('13. 4월)
- AI 방역체계 보완대책 ('14. 8월)
-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15. 7월)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 ('15. 8월)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16. 8월)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17. 4월)
- AI 방역 종합대책 ('17. 9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18. 8월)
- 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18. 9월)
-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 ('18. 9월)
- 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18. 12월)

-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19. 6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19. 7월)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 ('19. 9월)
- 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19. 9월)
- AI 방역실시요령 개정 ('19. 10월)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20. 5월)

※ 법령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라. 유관단체 의견수렴(신설, 필수 작성)

- 해당없음

마. 목 표

- (가축방역위생지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통한 높은 수준의 항체 양성률 유지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에서의 항체형성률은 80% 이상임
- (가축방역대응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주사, 검진, 혈청검사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가축사체처리지원)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조성된 가축 살처분 매몰지를 친환경적 방법으로 발굴·소멸함으로써 가축 질병 확산 및 환경오염 방지
- (가축백신지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살처분보상금)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구 분	전년도 실적	'21년 목표	목표치 근거
구제역(소) 항체 양성률(%)	96.3%	9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기준 (80%) 보다 높은 96%로 목표 설정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0.36%	0.34%	최근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보다 공격적인 목표치인 0.34% 이하로 설정
가축매몰지 발굴·소멸률(%)	95%	95%	가축전염병 발생과 매몰지 조성·발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발굴 대상 매몰지 95%의 소멸을 유지를 목표치로 설정
소·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	81.5	82.5%	최근 3년('17~'19)간 항체 양성률의 변동 추이 및 평균 증감률($\Delta 0.1\%$)을 감안 하여 '19년 수준으로 설정 * '17: 82.6%, '18: 82.5, '19: 82.4
주요가축전염병 발생률(%)	0.36%	0.34%	최근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보다 공격적인 목표치인 0.34% 이하로 설정

바. 중점 추진대책

- 수입 동·축산물 검역을 철저히 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국내 축산업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예방	• 동축산물검역검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수입 동·축산물 검역 등	재정
	• 가축방역	진단액 생산·공급, 병성감정, 혈청검사, 항원검사 등 세부사업 추진	재정
	• 가축방역위생지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통한 높은 수준의 항체양성률 유지	재정
	• 가축백신지원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재정
	• 가축전염병 국민안전교육	가축분야 종사자, 관련 인원 등에 대한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 최소화에 기여	기타
	• 가축전염병 관련 예산사업평가 대응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예산사업 평가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집행결과 평가에 대응하여 재난안전 예산사업의 적시적인 집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 여건조정	기타
대비·대응	• 가축전염병분야 관련 계획 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한 통합된 계획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기타
	• 가축전염병 대비훈련	해당 기능에서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기준으로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등을 실시하여 관련 요원 및 부서가 통합적으로 가축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태세 유지	기타
	• 가축질병대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축질병 발생정도를 고려하여 위기단계별로 농업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피해발생 방지 및 최소화	기타
	• 가축방역대응지원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긴급 방역 대책 추진	재정
복구	• 가축사체처리지원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조성된 가축 살처분 매몰지를 친환경적 방법으로 발굴·소멸함으로써 가축 질병 확산 및 환경오염 방지	재정
	• 살처분보상금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재정

사. 투자현황

○ 가축전염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426,290	212,603	249,077	270,414	355,365	338,831	367,756	381,651	412,051
동축산물검역검사	541,191	8,012	9,210	9,748	13,538	13,683	14,093	14,375	14,519
가축방역	110,460	16,283	19,263	18,147	24,191	32,576	33,553	34,224	34,567
가축위생방역지원	259,881	40,479	48,001	51,628	59,047	60,726	57,994	57,994	80,292
가축방역대응지원	581,669	107,829	132,603	130,891	109,864	100,482	103,439	105,508	108,673
가축사체처리지원	34,085	-	-	-	19,096	14,989	20,539	20,249	14,106
가축백신지원	111,074	-	-	-	54,629	56,445	58,138	59,301	59,894
살처분보상금	274,930	40,000	40,000	60,000	75,000	59,930	80,000	90,000	100,000

2) 농업사고

가. 피해현황

- 산업전체 재해율(4일 이상 요양)이 0.58%인 반면, 농업분야는 0.81%(‘19년)로 1.4배 수준

< 농업분야 산업재해 현황 >

산업 분류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해율 (%)	사망 만인율	재해율 (%)	사망 만인율	재해율 (%)	사망 만인율	재해율 (%)	사망 만인율	재해율 (%)	사망 만인율	재해율 (%)	사망 만인율
전산업 평균	0.53	1.08	0.50	1.01	0.49	0.96	0.48	1.05	0.54	1.12	0.58	1.08
농업	1.01	2.43	0.94	1.31	0.90	0.49	0.73	0.79	0.78	1.68	0.81	1.13

* 출처 : 산업재해 발생 현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재해율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유형별·연도별 부상자수·사망자수(16~19) >

구분		합계(명)	'16년(명)	'17년(명)	'18년(명)	'19년(명)
합계	사망	1,029	265	280	240	244
	부상	175,583	35,635	39,157	47,545	53,246
	합계	176,612	35,900	39,437	47,785	53,490
낙상	사망	175	40	46	46	43
	부상	68,364	15,178	15,746	18,119	19,321
	합계	68,539	15,218	15,792	18,165	19,364
농기계	사망	561	159	147	128	127
	부상	35,036	7,742	7,974	9,367	9,953
	합계	27,855	159	8,121	9,495	10,080
동물	사망	39	15	10	8	6
	부상	7,436	1,916	1,918	1,891	1,711
	합계	7,475	1,931	1,928	1,899	1,717
운반	사망	59	9	14	19	17
	부상	1,460	210	456	559	235
	합계	1,519	219	470	578	252
질병	사망	60	8	16	16	20
	부상	36,590	5,297	6,939	10,490	13,864
	합계	36,650	5,305	6,955	10,506	13,884
기타	사망	136	34	47	24	31
	부상	26,697	5,292	6,124	7,119	8,162
	합계	26,833	5,326	6,171	7,143	8,193

나. 원인분석

- 고령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통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확대 필요성 증대

-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 : ('17) 67.0세 → ('18) 67.7 → ('19) 68.2

<농가 경영주 연령별 현황>

(단위 : 천가구)

구분	계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평균연령
2017	1,042	9	59	208	329	436	67.0
남자	855	9	54	189	283	320	65.9
여자	187	1	5	19	47	116	71.6
2018	1,021	8	50	186	324	453	67.7
남자	830	7	46	169	278	331	66.7
여자	191	1	4	18	46	122	72.2
2019	1,007	7	45	170	324	462	68.2
남자	819	6	42	154	279	339	67.2
여자	188	1	3	16	45	123	72.7

* 출처 : 농림어업조사(통계청)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 ('17) 54.3% → ('18) 63.3 → ('19) 64.8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현황('19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농업인수							
	소계 (가입률)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기타
		내국인	외국인	가족 내국인	가족 외국인	고용인 내국인	고용인 외국인	
합계	845,337 (64.8%)	621,875	49	196,212	257	75	7	26,862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라. 유관단체 의견수렴

- (민원)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이후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급여 지급 필요('19)
-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이후 사망할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 까지는 유족급여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상품 개발('20.1~8월) 및 판매('20.9월)

마. 목 표

-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구분	3년 평균 실적	'21년 목표	목표치 근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57.7%	66.5%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및 보험 상품개선 등을 통한 가입수요 성장세 등을 감안한 목표치 설정

바. 중점 추진대책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상향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설명 및 현장점검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추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개선 협의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구분
대비	•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기타

사.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60,472	59,295	59,525	71,202	83,415	87,035	83,415	83,415	83,415

3. 협조유형

1) 풍수해, 지진피해

가. 피해현황

(단위 : ha)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풍수해 피해 면적(ha)	18,179	6,270	1,563	16,828	4,674	61,558

※ 출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9)

나. 원인분석

-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빈도와 강도 심화
 - 태풍의 대형화, 산지가 많은 특성으로 국지성·계절성 집중호우 빈발
 - 여름철 연간 강수량의 2/3가 집중되는 기상학적 특성
 - * 자료 : 기상청 「기후특성분석 보도자료」 2015.1.2.
- 농업재해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어려움
 - 재난의 종류 및 발생범위 광범위, 각종 농업시설의 전국적 산재, 예산의 과다소요로 지자체의 자구책 미흡 등 제반여건 열악
 - 농업재해의 특성상 인명사고보다 재산피해가 많은 특성으로 사전 대응보다 사후복구 중심으로 재난 관리
- 농업수리시설의 노후화로 국지성·계절성 집중호우 등에 취약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70천여개소)의 61%가 30년 이상
- 지진 발생가능성 상존으로 노후한 저수지 등 수리시설 피해에 취약
 - 규모 2.0이상 지진 발생빈도 증가('10~'18년 103회/년)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11, 국무총리실),
- 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13, 농림축산식품부)

라. 목 표

- 수리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등을 통해 홍수·태풍, 지진 등으로 부터 농경지 침수(염해) 등 예방 및 영농편의 등 도모

○ 치수능력, 배수개선 확대 등을 통한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

구분	과거 5년 평균 실적	'21년 목표	목표치 근거
재해위험 예방율(%)	61.8% (누계사업비 확보율)	85.0%	치수능력 확대사업 누적 사업 추진율(%)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율(%)	100%	65.2%	(저지대 농경지 침수 해소면적 / 저지대 농경지 전체 침수면적) × 100
방조제 개보수 완료지역 염해피해 해소율(%)	100%	100%	최근 개보수 완료지역 염해 피해 해소율 실적

마. 중점 추진대책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비고
예방	•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사업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당, 배수갑문)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능력 향상 및 재해예방 도모	재정
	• 배수개선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및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재정
	•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노후·파손 등으로 태풍·해일·지진 등에 취약한 국가지방관리 방조제를 보수·보강함 으로써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재해예방 도모	재정
	• 수리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정밀안전점검 실시	행안부 통제 및 자체으로 실시하는 국가 안전대진단, 정밀안전점검시 참가하여 수리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방지	기타
	• 풍수해, 지진피해 관련 예산사업 평가 대응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예산사업 평가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집행결과 평가에 대응하여 재난안전 예산사업의 적시적인 집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 여건조정	기타
대비 대응	• 풍수해, 지진피해분야관련 계획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풍수해분야 관리를 위한 통합된 계획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기타
	• 저수지 붕괴사고 대비훈련	저수지 붕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복구자원 비축, 관련 기능이 통합하여 작성한 위기 관리 매뉴얼 에 의거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저수지 붕괴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기타
	• 풍수해, 지진피해대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필요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풍수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기단계별로 농업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피해 발생 방지 및 최소화	기타

바.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842,801	356,900	357,690	342,213	385,499	400,499	470,487	508,869	549,242
대규모농업기반 시설치수능력확대	194,691	28,400	39,000	42,000	45,416	39,875	22,990	422	310
배수개선	1,429,405	291,500	277,800	256,750	288,845	314,510	400,000	460,000	500,000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218,705	37,000	40,890	43,463	51,238	46,114	47,497	48,447	48,932

2) 가 물

가. 피해현황

- 최근 5년간('15~'19) 국지적 강수부족,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뭄피해면적은 51,069ha였으나, '19년은 가뭄피해면적 'ZERO'
(단위 : ha)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 피해 유형	5,978	13,247	13,446	18,398	-
- 논	5,978	6,526	12,760	1,633	-
- 밭	-	6,721	686	16,765	-

* '16, '18년의 경우, 폭염이 겹쳐 밭작물 피해가 상대적으로 큼

나. 원인분석

- 지속적인 강우 감소, 지역별 강우편차심화 및 집중호우 증가 등 활용 가능한 강수 감소
 - 최근 5년간 평년 이상의 강수가 내린 해는 '18년이 유일하지만 유례 없는 폭염('18년 폭염일수 29.8일, 평년 9.2일)으로 밭작물 피해 발생
 - '19년에는 평년 강수 1,308mm의 90% 수준이었으나, 중부지방은 평년 대비 강수는 70%에 불과

* '19년 평년 대비 강수(%) : 인천 75, 경기 71, 강원 78, 충북 77, 충남 71

-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 능력 미비
 -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있고 용·배수로도 흠수로**가 많아 누수 등 물 관리에 어려움
 - * 72,610개의 수리시설 중 설치된 지 30년 미만은 28,824개소(39.7%)에 불과
 - ** 용배수로 190천km 중 흠수로가 99천km(52%)를 차지
 - 수리안전답율* 62%, 밭기반정비율은 67%로 가뭄 발생시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가 상당수 존재

* 전체 논 면적 대비 10년 빈도 이상의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논면적 비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뭄 대응 종합대책’ (‘17.8.24, 총리님 보고)
 -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수계연결 등 기 확보된 용수를 효율적 활용방안 등 대책 마련
-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용수 공급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

라. 목 표

- 수리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등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 등을 통해 가뭄피해 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

구분	과거 3년 평균 실적	‘21년 목표	목표치 근거
농촌용수 급수율(%)	74.8%	83.4%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급수면적 (누계)/사업대상면적 × 100 * 대상면적 136.4천ha

마. 중점 추진대책

- (사전 대비) 수리시설 보수·보강, 저수율·강수량 모니터링 및 용수 부족 우려지역 사전 양수저류 등 영농기 용수부족 우려 사전 대비
 - 저수지, 양수장 등은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능 유지 곤란 및 내진성능* 부족 시설은 수리시설개보수** 실시
- * 내진성능 확보 :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용량 30만㎥ 이상 1,204개소 중 1,055개소(87%)
 내진성능 미확보 : 31개소(2%) 내진 보강 공사중,
 118개소(11%)는 ‘20.12월까지 내진성능 평가 완료
- ** 수리시설개보수 : (‘20) 5,831억원 → (‘21안) 6,065(증 680)
-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15~)를 통해 농업·생활·공업 등 용수별 가뭄상황을 공유(매주)하고 가뭄 예·경보 실시(매월)

- *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를 통해 일단위 강수량·저수율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국지적 강수 부족에 상시 대비
- 영농기 전 저수율이 평년 대비 70% 미만 등 용수부족 우려지역* 사전 양수저류 등을 통한 용수확보 추진
- 영농기 전 관정, 양수장비 등 영농급수 시설 및 장비 사전 점검을 통해 물 부족 우려 발생시 즉각 활용하도록 조치
- **(영농기 대응)** 영농기 국지적 강수부족 등 용수부족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 추진
 - 영농기 국지적 강수부족 등으로 인해 용수부족 발생시에는 관정 개발, 둑병 설치, 하상굴착 등 긴급급수대책* 추진
 - * 가뭄대비용수개발 : ('20) 115억원 → ('21안) 118억원(증 3)
 - * 수리시설유지관리 : ('20) 1,500억원 → ('21안) 1,518억원(증 18)
- **(항구 대책)** 수계연결, 용수원개발 등을 통해 상습용수부족 지역 대한 용수공급 확대
 - '17년 가뭄극심지역(경기·충남·전남) 수계연결 등 용수공급 조기 완료
 - * 아산호-삼교호-대호호('20), 아산호-금광지-마둔지('21) 순차 준공
 - * 영산강IV지구 준공전 조기용수공급 확대('20 : 1,771ha → '21 : 3,691ha, 잠정)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완공 위주 집중 지원
 - * ('20) 10지구 4.8천ha 준공 → ('21안) 11지구 4.0천ha 준공 예정
 - 강원 태백(매봉산 118ha) 채소주산단지 용수공급시설 완공('20)
 - * 강원 강릉 안반데기(193ha, '17.5), 정선 방제리(118ha, '18.6), 태백 귀네미 (65ha, '18.6) 등 순차 완료
 - 제주도 내 균형된 용수공급 및 배분에 필요한 용수원 개발, 대용량 저수조 및 관로 연계 등 설치 지원
 - * 사업기간 '17~'24(8년간) / 총사업비 1,362억원('20까지 379억원 지원) / 수혜면적 5.6천ha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비고
예방	• 수리시설개보수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재정
	• 수리시설유지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운영·관리 및 점검·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예방	재정
	• 농촌용수개발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공급	재정
	• 수리시설 관련 예산사업 평가 대응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예산사업 평가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집행결과 평가에 대응하여 재난안전 예산사업의 적시적인 집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 여건조정	기타
대비 대응	• 가뭄대비용수개발	가뭄발생지역에 용수대책비 긴급지원 및 가뭄취약지역에 대한 항구적 용수원개발 지원을 통해 농작물 가뭄피해 최소화 도모	재정
	• 수리시설분야 관련 계획 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수리시설분야 관리를 위한 통합된 계획 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기타

바.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5,276,879	1,047,470	1,015,619	1,069,918	1,056,843	1,087,029	1,140,241	1,202,708	1,220,457
수리시설개보수	2,636,917	474,300	460,000	558,018	538,136	606,463	645,258	688,250	700,525
수리시설유지관리	768,732	154,700	162,232	150,000	150,000	151,800	156,354	159,481	161,076
농촌용수개발	1,771,830	365,970	381,287	350,200	357,407	316,966	326,475	342,580	346,335
가뭄대비용수개발	99,400	52,500	12,100	11,700	11,300	11,800	12,154	12,397	12,521

3) 폭염

가. 피해현황

(단위 : ha)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폭염일수(일)	18.4	10.1	22.4	14.4	31.5	13.8
가축피해(천마리)	5,073	2,666	6,144	7,260	9,078	219
농작물피해(ha)	7,835	-	16,667	-	22,509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2020)

나. 원인분석

- (폭염 일수) 지난 47년('73~'19년) 간 평균 폭염일수*는 10.9일이며, '80년대('80~'89년) 8.2일에서 '10년대('10~'19년) 15.5일로 89% 증가**

* (산정) 전국 45개 지점을 대상, 모든 지점에서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 기록 시 1일로 산정

** ('15년) 10.1일 →('16년) 22.4일 →('17년) 14.4일→('18년) 31.5일→('19년) 13.8일

- (농업피해)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일 햇볕데임 등 피해

* 가 축 피 해 : ('15) 266만마리 → ('16) 614 → ('17) 726 → ('18) 908 → ('19) 219

* 농작물피해 : ('15) 없음 → ('16) 16,667ha → ('17) 없음 → ('18) 22,509 → ('19) 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20년 폭염 종합대책 수립('20.5.14,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 '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 수립('20.6, 농림축산식품부)

라. 목 표

-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림시설 피해 최소화
 - 선제적 협업체계 구축, 조기 대응체제 가동

마. 중점 추진대책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농작물·가축 폭염피해 대비 농업 재해보험제도 개선	폭염에 취약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보험품목 확대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해 재해보험에 적정 사육두수 기준 설정(~'22) * 대상 축종 : ('20) 육계·토종닭 → ('21) 산란계 → ('22) 양돈 등 타 축종 추가 검토	재정
	폭염 관련 예산사업 평가 대응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예산사업 평가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집행결과 평가에 대응하여 재난안전 예산사업의 적시적인 집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 여건조정	기타
	폭염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기능이 통합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최신화하여 폭염대비 대응태세 유지	기타
대비	폭염대비분야 관련 계획 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폭염대비분야 관리를 위한 통합된 계획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기타
대응	폭염대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폭염 정도를 고려하여 위기단계별로 농업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피해발생 방지 및 최소화	기타

바. 투자현황

* 농업 재해대책 및 재해보험 예산에 포함

4) 식품사고

가. 피해현황

- 산란계 케이지 사육과정에서 닭이(와구모) 구제용 목적 유기합성농약 사용으로 무항생제 인증계란에서 잔류농약 검출('17.8.15)
 - 산란계 케이지 사육 및 사육밀도 미흡 등 열악한 축산환경으로 인한 가축질병 예방효과 미흡 등 친환경축산 한계 노출
 - * (산란계 사육밀도) 유기 0.22㎡/마리, 동물복지 0.075, 무항생제·관행 0.05
- '17년 이후 농축산물 식품사고 발생은 없으나, 유해물질 관련 사고 발생 위험성은 지속 발생
 - 최근 산업화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인근 지역의 농지·용수·농작물 피해에 의한 농산물 오염 연관성 조사 필요
 - * 영풍석포제련소(경북 봉화) 비소 39.3ppm, 납 126ppm(기준치 63배), 카드뮴 6.2ppm(기준치의 12배)검출되어 낙동강에 중금속 오염의 중심('19.6.11, MBC PD수첩)
 - 구미국가산업단지 스타케미컬에서 굴뚝해체 작업 중 굴뚝 안 테레프탈산(TPA) 폭발로 분진 발생
 - 인근 54개필지 55,000㎡농지에 매실 등의 과실류, 들깨, 콩 등의 전작물 재배에 따른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조치
 - * TPA와 벤조피렌 분석 실시(5건, 불검출)
 - 충남 금산 (주)램테크놀러지의 배관 일부가 파열돼 불산이 유출
 - * 사고지점 농작물 시료채취 후 분석(13점)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2.2	-	2	6	2	1	-

※ 통계의 출처(발생건수)

- * ('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 ('16년) 구미 TPA폭팔 분진발생, 금산 불산 유출 사태
- ('15년) 경기 파주 피탄지역 비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비소피해, 가짜 백수오 파동, 영천시 불산 유출 피해, 플라스틱 제조공장 유해물질 누출, 중국 텐진항 폭발 관련 국내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 ('14년) 인천 아세트산 비닐 누출사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피해

나. 원인분석

- 기후변화 및 재배환경 변화에 의한 새로운 병해충 발생 등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농약의 오·남용 사례 증가
-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약 기록 및 관리 등 체계적인 제도 정비 미흡
- '17. 살충제 계란 사태 등 식품사고는 다양화·대형화되어 예측이 어려우며, 위생 사각·취약지대 존재로 사고위험 잔존

위험요인	대책	핵심 사업
▶ 축산물 위생관리 인력 부족(식약처이관) ▶ 정밀검사 장비 부족에 따른 검사물량 확대관련 대응 미흡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관련 국민 인식 부족	· 축산물 위생관리 인프라 구축 · 노후화 검사장비 교체 및 검사장비 확충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 교육·홍보 강화	· 축산물 위생관리 인력 증원 추진 · 정밀검사 장비 교체·구입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 교육·홍보 확대 실시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및 품질향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고 국민건강 확보 및 축산식품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8조
 -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및 '18.12.부터 시행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이력관리업무의 지속추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7조
- 「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라. 목 표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구분	과거 5년 평균 실적	'21년 목표	목표치 근거
도축장,집유장 감시 단속 비율(%)	42.1	43.8	도축장,집유장 감시·단속 개소수/ 전체 도축장, 집유장 개소수) × 100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활용 증가율(%)	8.7	9.4	(금년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조회 건수 - 전년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조회건수) / 전년 수입축산물 이력 정보 조회건수] × 100

마. 중점 추진대책

- 과학적·체계적인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내 축산업 보호,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리강화로 유통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공
-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농업 현장 안전성 강화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 축산식품안전관리	생산단계 축산물안전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리로 유통질서 확립	재정
	• 축산물HACCP지원	축산농장 HACCP 인증 및 관리 강화	재정
	•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업인 대상 홍보·교육 및 농약안전사용 지도 강화로 생산단계 부적합농산물 발생 예방	재정
	•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축산물 안전관리의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	재정
	• 식품사고 관련 예산 사업 평가 대응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예산사업 평가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집행결과 평가에 대응하여 재난안전 예산사업의 적시적인 집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 여건조정	기타
대비	• 식품사고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기능이 통합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최신화하여 식품사고 대비 대응태세 유지	기타
	• 식품 사고 대비 분야 관련 계획 수립, 위기 관리 매뉴얼 작성	식품사고 관련분야 관리를 위한 통합된 계획수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기타
	• 식품사고 대비 대책 상황실 운영	식품사고 정도를 고려하여 위기단계별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피해발생 방지 및 최소화	기타

바.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229,349	38,912	47,865	45,091	49,854	47,627	49,791	51,037	52,062
축산식품안전관리	10,581	1,739	2,540	1,910	2,179	2,213	2,279	2,325	2,348
축산물HACCP지원	8,167	1,650	1,650	1,650	1,650	1,567	1,614	1,646	1,663
농산물안전성조사	113,744	20,051	23,267	23,590	23,302	23,534	24,976	25,725	26,497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96,857	15,472	20,408	17,941	22,723	20,313	20,922	21,341	21,554

4. 공통

1). 재난 · 사고복구

가. 현황 및 원인분석

- 농업재해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어려움
 - 재난의 종류 및 발생범위 광범위, 각종 농업시설의 전국적 산재, 예산의 과다소요로 지자체의 자구책 미흡 등 제반여건 열악
 - 농업재해의 특성상 인명사고보다 재산피해가 많은 특성으로 사전 대응보다 사후복구 중심으로 재난 관리

나. 관련 계획 및 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다. 목 표

-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복구비 등 지원

구 분	과거 3년 평균 실적	'21년 목표	목표치 근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4.0%	36.0%	보험가입면적 / 보험대상면적
재보험금 적기 지급률	100%	100%	Σ 약정기한내 청구 재보험금 지급액 / Σ 청구 재보험금
사후복구 지원강화	100%	100%	(지자체 복구지원 요청 후 20일 내 복구계획 심의·확정 및 국비 지자체 재배정완료 건수 / 전체 복구계획 확정 건수)×100

마. 중점 추진대책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구분
대비 대응	•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가축 피해를 보험원리를 이용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재정
대비 대응	• 재보험금	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재정
복구	• 재해대책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및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시, 복구소요액의 일부를 농업인 및 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재정
	• 재해대책비(융자)		

바.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3,045,364	417,332	389,610	817,401	608,105	617,380	885,835	944,608	1,231,007
농업재해보험	2,085,724	286,995	303,110	381,786	479,416	438,880	665,235	721,308	1,005,007
재보험금	515,188	53,837	10,000	351,351	50,000	50,000	92,100	94,800	97,500
재해대책비	301,952	48,000	48,000	55,764	50,188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재해대책비(융자)	142,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III

재정투자계획

□ 현 황

- '21년 재난안전 총 예산(안) : 2,662,092백만원
- '20년 2,650,926백만원 대비 11,166백만원(0.43%) 증가

□ 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

- 증액사업

사업명	'20 예산	'21 예산안	증액
13개	1,298,770	1,460,785	162,015
배수개선	288,845	314,510	25,665
수리시설개보수	538,136	606,463	68,327
수리시설유지관리	150,000	151,800	1,800
가뭄대비용수개발	11,300	11,800	500
동축산물검역검사	13,538	13,683	145
가축방역	24,191	32,576	8,385
가축위생방역지원	59,047	60,726	1,679
가축백신지원	54,629	56,445	1,816
축산식품안전관리	2,179	2,213	34
농산물안전성조사	23,302	23,534	23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83,415	87,035	3,620
재해대책비	50,188	100,000	49,812

○ 감액사업

사업명	'20 예산	'21 예산안	감액
8개	1,161,810	1,039,116	△ 122,694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45,416	39,875	△ 5,541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51,238	46,114	△ 5,124
가축사체처리지원	19,096	14,989	△ 4,107
가축방역대응지원	109,864	100,482	△ 9,382
살처분보상금	75,000	59,930	△ 15,070
농촌용수개발	357,407	316,966	△ 40,441
축산물HACCP지원	1,650	1,567	△ 83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22,723	20,313	△ 2,410
농업재해보험	479,416	438,880	△ 40,536

○ 기타사업

사업명	'20 예산	'21 예산안	비고
2개	78,500	78,500	-
재보험금	50,000	50,000	
재해대책비(용자)	28,500	28,500	

□ 재정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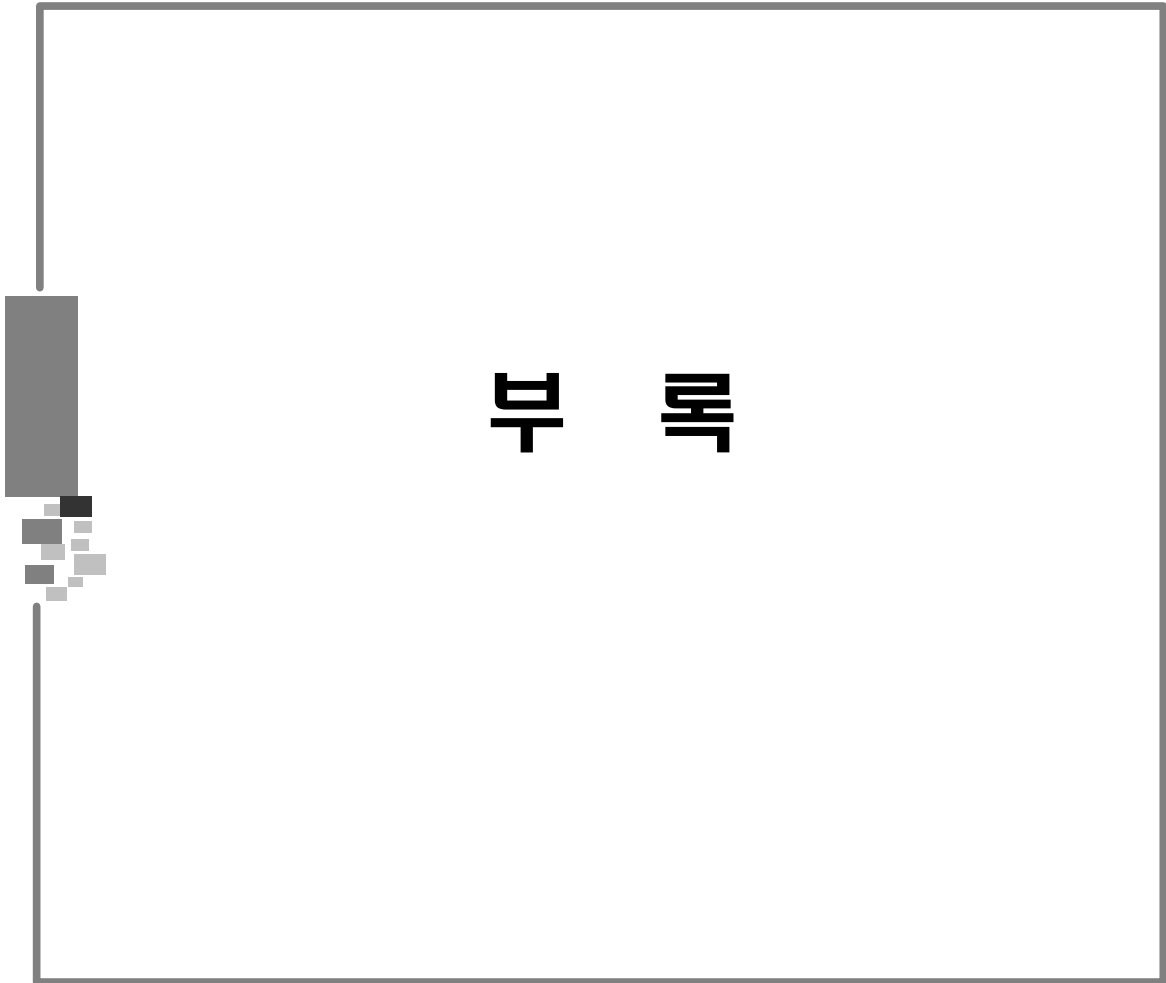
분야	유형 (부문)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17	'18	'19	'20	'21	'22	'23	'24	
합 계			2,132,512	2,119,386	2,616,239	2,539,081	2,578,401	2,997,525	3,172,288	3,548,234	
자연재난	소 계		1,404,370	1,373,309	1,412,131	1,442,342	1,487,528	1,610,728	1,711,577	1,769,699	
	풍수해 (협조)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28,400	39,000	42,000	45,416	39,875	22,990	422	310	
		배수개선	291,500	277,800	256,750	288,845	314,510	400,000	460,000	500,000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37,000	40,890	43,463	51,238	46,114	47,497	48,447	48,932	
	가뭄 (협조)	수리시설개보수	474,300	460,000	558,018	538,136	606,463	645,258	688,250	700,525	
		수리시설유지관리	154,700	162,232	150,000	150,000	151,800	156,354	159,481	161,076	
		농촌용수개발	365,970	381,287	350,200	357,407	316,966	326,475	342,580	346,335	
		가뭄대비용수개발	52,500	12,100	11,700	11,300	11,800	12,154	12,397	12,521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소 계		310,810	356,467	386,707	488,634	473,493	500,962	516,103	547,528	
	가축 전염병 (주관)	동축산물검역검사	8,012	9,210	9,748	13,538	13,683	14,093	14,375	14,519	
		가축방역	16,283	19,263	18,147	24,191	32,576	33,553	34,224	34,567	
		가축위생방역지원	40,479	48,001	51,628	59,047	60,726	57,994	57,994	80,292	
		가축방역대응지원	107,829	132,603	130,891	109,864	100,482	103,439	105,508	108,673	
		가축사체처리지원	-	-	-	19,096	14,989	20,539	20,249	14,106	
		가축백신지원	-	-	-	54,629	56,445	58,138	59,301	59,894	
		살처분보상금	40,000	40,000	60,000	75,000	59,930	80,000	90,000	100,000	
	식품 사고 (협조)	축산식품안전관리	1,739	2,540	1,910	2,179	2,213	2,279	2,325	2,348	
		축산물HACCP지원	1,650	1,650	1,650	1,650	1,567	1,614	1,646	1,663	
		농산물안전성조사	20,051	23,267	23,590	23,302	23,534	24,976	25,725	26,497	
		축산물위생안전 검사운영	15,472	20,408	17,941	22,723	20,313	20,922	21,341	21,554	
	농업인 사고 (주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9,295	59,525	71,202	83,415	87,035	83,415	83,415	83,415	
	공통	소 계		417,332	389,610	817,401	608,105	617,380	885,835	944,608	1,231,007
		재난 구호 및 복구 (협조)	농업재해보험	286,995	303,110	381,786	479,416	438,880	665,235	721,308	1,005,007
재보험금			53,837	10,000	351,351	50,000	50,000	92,100	94,800	97,500	
재해대책비			48,000	48,000	55,764	50,188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재해대책비(음자)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IV

행정사항

- ①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농림식품 해당분야) 및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 ② 소관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③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및 기관·개인 대응수칙 등을 즉시 보완하여야 함
- ④ 농림축산분야 관련 아래 재난안전책임기관은 본 집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목 차

1. 추진대책(재정사업)	54
2. 재난안전 관련 법령, 안전관리 규정	87
3. 가축질병 관리 비상연락망	88

1

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동축산물검역검사

작성 부서	농림축산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영숙 사무관	054-912-0417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은혜 주무관	054-912-0419 mission11@korea.kr	예방

- ◇ 해외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수입 동·축산물 검역, 수출검역 지원체계 확립 등으로 국내 축산업 보호 및 국민 건강 향상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장, 제3장 ~ 제5장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수입 동축산물 검역 불합격품 검색 비율(%)	43.8	43.9	44.0	(전체 동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 / 전체 동축산물 검역 건수) × 100	매우높음

- (국경검역) 해외전염병 국내 유입 차단에 필요한 국경검역 강화
 - 공항만 검역보조인력(공무직) 운영, 제2외국어 통역 및 검역 X-ray 검색보조 용역 운영, '20년 국회중액 X-ray 구입완료
 - (‘20) 9,529백만원 → (‘21) 9,121(△408)
- (정밀검사) 수출입 동·축산물 전염병 검사 및 모니터링 검사
 - (‘20) 650백만원 → (‘21) 642(△8)
- (검역운영) 검역계류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및 탐지전센터 시설유지보수, 국내외 현장여비, 검역시설 공공요금 등 운영
 - (‘20) 3,359백만원 → (‘21) 3,920(증 561)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연간/분기별/단위업무별 추진계획 수립 • 소관 사무별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업무 수행	국경검역대책 수립(1월)
2/4분기	• 소관 사무별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업무 수행 •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예산 집행 현황 등 점검	CIQ 중앙기관 업무협의회 (상반기)
3/4분기	• 소관 사무별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업무 수행 •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예산 집행 현황 등 점검	동축산물 검역검사 시스템·제도 개선 (연중)
4/4분기	• 업무 추진 결과 취합 및 차년도 연간 추진계획 작성	해외작업장 점검 결과보고(차년초)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동축산물 검역검사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54,191	8,012	9,210	9,748	13,538	13,683	14,093	14,375	14,519	
국경검역	34,318	4,328	5,398	5,942	9,529	9,121	9,693	9,875	9,947	
정밀검사	2,497	547	553	555	650	642	800	900	900	
검역운영	16,926	3,137	3,259	3,251	3,359	3,920	3,600	3,600	3,672	

2) 가축방역

작성 부서	농림축산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득신 사무관	054-912-0361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지연 주무관	054-912-0363 bi98105@korea.kr	예방

◇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주요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동물용 의약품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및 동물 보호·복지 향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 · 6 · 12 · 13 · 15 · 50조, 약사법 제85조

□ 목 표

지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진단액 공급 가축 전염병의 감소율(%)	15.2	2.5	2.5	100 - {(당해연도 진단액 공급 가축전염병 발생건수(A))/ (최근 5년간 진단액 공급 가축전염병 평균 발생건수(B))} × 100	보통

□ 주요내용

-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진단액 생산·공급, 병성감정, 혈청검사, 항원검사 등 세부사업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세부 추진과제 예산배정 -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1월 1~3월
2/4분기	- 차년도 가축방역사업 수요조사 -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4월 4~6월
3/4분기	- 세부 추진과제 중간진도 평가 -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7월 7~9월
4/4분기	- 가축방역사업 추진결과 취합 - 차년도 가축방역사업 추진계획 작성	11월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가축방역	110,460	16,283	19,263	18,147	24,191	32,576	33,553	34,224	34,567	

3) 가축위생방역지원

작성 부서	방역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한민 사무관	044-201-2517	재난안전관리 단계
			양현진 주무관	044-201-2518 hjyang@korea.kr	예방

◇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한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혈청검사용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등을 위한 사업계획(농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마련·시행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구제역(소) 항체양성률(%)	95%	96%	96%	(항체양성두수/검사두수)×100	보통

*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소에서의 항체형성률은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에서의 항체형성률은 80% 이상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소 80% 미만으로 설정하여 정책목표로 관리

□ 주요내용

-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통한 축산물 수출 촉진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시료 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사업 추진계획(실시요령) 마련 및 관계기관 통보	2월
2/4분기	▪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	3월
3/4분기	▪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	6월
4/4분기	▪ 사업비 집행 추진상황 점검 등	11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가축위생방역지원	259,881	40,479	48,001	51,628	59,047	60,726	57,994	57,994	80,292	

4) 가축방역대응지원

작성 부서	방역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경일 사무관	044-201-2519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진경 주무관	044-201-2521 pjk0819@korea.kr	대비·대응

- ◇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주사, 검진, 혈청검사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 가축방역 및 검사에 필요한 차량 및 검사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방역능력 제고 및 가축질병 검사능력 향상 도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율(%)	0.38	0.38	0.34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건수의 합 / 사육농가수) × 100	매우높음

* 주YG축전염병(14종)

- 소 : 구제역, 탄저, 기종저, 결핵, 브루셀라
- 돼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유행성설사병
- 가금 : 고병원성AI, 뉴캐슬병, 가금티프스병
- 기타 : 광견병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긴급방역비,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여비, 수의사 연수교육 및 워크숍 개최, 예방주사, 검진, 기생충 구제 등
- 가축혈청검사·병성감정, 가축질병 모니터링,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 BSE 진단키트,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질병 검사실 운영
- 방역·소독차량, 시험소 검사장비, 소독장비 등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 추진경위 : '45년부터 시도가축방역사업 소요예산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예방접종, 검진, 혈청검사·병성감정 등 세부사업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사업 추진계획(실시요령) 마련 및 관계기관 통보	1월
2/4분기	•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추진상황 점검 등	연중
3/4분기	•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	연중
4/4분기	• 사업비 집행 추진상황 점검 등	연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가축방역대응지원	581,669	107,829	132,603	130,891	109,864	100,482	103,439	105,508	108,673	

* 시도가축방역 사업은 '21년부터 과목구조개편으로 세부사업명이 가축방역대응지원으로 변경

5) 가축사체처리지원

작성 부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영규 사무관	044-201-2558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정화 주무관	044-201-2559 dvmjhso@korea.kr	복구

◇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조성된 가축 살처분 매몰지를 친환경적 방법으로 발굴·소멸함으로써 가축질병 확산 및 환경오염 방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제1항, 2항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율(%)	-	95	95	{(전년도 발굴가능 매몰지개수 당해 년도 발굴소멸 매몰지개수)/전년도 발굴가능매몰지개수}x100	보통

□ 주요내용

- 가축사체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조성된 매몰지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토록 사후관리, 발굴·복원, 시설·장비 등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세부 추진과제 예산배정 -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1~3월
2/4분기	- 차년도 가축방역사업 수요조사 -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연중
3/4분기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연중
4/4분기	- 사업추진 결과 취합 - 차년도 사업추진 계획 작성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가축사체처리지원	34,085	-	-	-	1,906	14,989	20,539	20,249	14,106	

6) 가축백신지원

작성 부서	구제역 방역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광상익 사무관	044-201-2539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수지 주무관	044-201-2540 suji9480@korea.kr	예방

◇ 2010년 구제역백신 접종 정책 추진으로 2012년부터 매년 소요사업비 반영

*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약물, 투약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추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구제역(소, 돼지) 백신 항체양성률(%)	-	-	82.5%	{{(소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두수/ 검사두수)*100*0.3}+(돼지 구제역 백 신항체 양성두수/검사두수)*100*0.7}	

* 산출근거: 연간 '혈청예찰 세부계획'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혈청예찰 보고자료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농가),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염소 구제역 포획·예방접종 시술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등 지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 추진경위 : '11년부터 소요예산 지원(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의 내역 사업에서 '20년부터 신규 분리)

○ 세부 추진계획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구제역 방역 지원을 전국단위로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추진계획(실시요령) 마련 및 관계기관 통보	2월
2/4분기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	4월
3/4분기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	7월
4/4분기	•사업비 집행 추진상황 점검 등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가축백신지원	111,074	-	-	-	54,629	56,445	58,138	59,301	59,894	

기 살처분보상금

작성 부서	구제역 방역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영민 사무관 박해성 주무관	044-201-2541 044-201-2544 phsk@korea.kr	재난안전관리 단계 복구
-------	---------	--------------	--------------------	---	-----------------

-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 * (지급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지급기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0.38 (100%)	0.38 (100%)	0.34 (100%)	13종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건수의 합 / 사육농가수 ×100	우수

□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살처분보상금) 구제역, AI, ASF, 브루셀라, 결핵병, 돼지열병 등
- BSE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식품안전의 강화를 위하여 골절 등 명백한 부상을 제외한 기립불능우에 대하여 도살·처리를 금지하고 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
 - (폐기보상금) 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한우, 육우, 젃소)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국가방역계획 수립에 따른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 수립	1월
2/4분기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예산(살처분보상금, 도태장려금)배정	4월
3/4분기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예산(살처분보상금, 도태장려금)배정	7월
4/4분기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예산(살처분보상금, 도태장려금)배정 • 회계연도 보상금 집행 정산완료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살처분보상금	274,930	40,000	40,000	60,000	75,000	59,930	80,000	90,000	100,000	

8)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사업

작성 부서	간척지 농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신동원 사무관	044-201-188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선웅 주무관	044-201-1875 ksu7004@korea.kr	예방

-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당, 배수갑문 등)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능력 향상 및 재해예방

* 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13, 농림축산식품부)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여도
재해위험 예방율(%)	신규	76.1	85.0	(당해연도까지 재해위험예방 진척율 / 전체 위험률) × 100	보통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 기 설치된 저수지·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당, 배수갑문)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능력 향상 및 재해 예방 도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준공지구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삽교) 배수갑문 확장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방지 등 재해예방 도모
 - (이동) 홍수배제시설 추가 설치로 저수지 치수안전성 확보
 - (불갑) 물넘이 확장 및 제체 보강으로 저수지 치수안전성 확보
 - (사후환경조사) 간척지, 저수지 독높임 등 대규모사업은 준공 이후 5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 치수능력확대사업 추진현황 >

지구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19년 까지	%	'20년 예산	%	'21년 이후
계		311,056	187,888	60.4	45,416	75.0	77,752
시행중							
삽교방조제	'14~'21	83,974	52,225	62.2	20,000	86.0	11,749
불갑저수지	'16~'22	64,694	10,297	15.9	10,648	32.4	43,749
이동저수지	'16~'21	44,032	14,365	32.6	14,000	64.4	15,667
사후환경조사	-	16,131	8,776	57.4	768	62.5	6,587
준공							
예당저수지	'13~'19	102,225	102,225	100.0	-	100.0	-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삽교) 흙쌓기, 수문 및 권양기(6조), 통신설비 등 (불갑) 부춘간선 용수로 시공 및 용지매수 추진 (이동) 제당 쌓기, 여수토 방수로 등 부대공사	1월~3월
2/4분기	(삽교) 흙쌓기, 정수지 보호블럭, 옹벽, 수문 및 권양기 설치 등 (불갑) 물맞이 교량공사, 스톱로그 및 권양기 제작 등, 취수탑 리노베이션 등 (이동) 제당 쌓기, 여수토 방수로, 진위천 하상 보호공 등	2월~6월
3/4분기	(삽교) 흙쌓기, 정수지 보호블럭, 옹벽, 수문 및 권양기 설치 등 (불갑) 가물막이 쌓기, 여수토방수로, 권양기 제작 등 (이동) 제당 쌓기, 여수토 방수로, 부대공사 등	7월~9월
4/4분기	(삽교) 흙쌓기, 정수지 보호블럭, 옹벽, 수문 및 권양기 설치 등 (불갑) 가물막이 쌓기, 여수토방수로, 권양기 제작 등 (이동) 제당 쌓기, 여수토 방수로, 진위천 스톤매트리스 등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194,691	28,400	39,000	42,000	45,416	39,875	22,990	422	310	

* 본 예산 기준

9) 배수개선

작성 부서	간척지 농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신동원 사무관	044-201-188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선웅 주무관	044-201-1875 ksu7004@korea.kr	예방

◇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11, 국무총리실)

* 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13, 농림축산식품부)

□ 목 표

지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율(%)	100.0	100.0	65.2	(저지대 농경지 침수 해소율 /저지대 농경지 전체 침수율)×100	보통

□ 주요내용

-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 전국 상습침수 농경지 302.7천ha 중 '19년까지 189.8천ha(62.7%) 완료
- '20년도 161지구(2,888억원)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20.8천ha에 대하여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 노력

<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 >

구 분	총계획	'19 까지	'20 계획	'21 이후
사업량(천ha)	302.7	189.8	4.4	108.5
사업비(억원)	118,491	60,008	2,888	55,595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1년 배수개선사업 예산배정 및 사업 착수	1월
	'21년 우기철 대비 배수개선사업 중점관리계획 수립	4월
2/4분기	우기대비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5월
	'21년 신규지구 및 기본조사 지구 선정	6월
3/4분기	신규지구 세부설계 착수 및 기본조사 실시	6월~12월
4/4분기	기본계획 수립 및 준공지구 마무리 점검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배수개선	1,441,405	291,500	277,800	256,750	288,845	314,510	400,000	460,000	500,000	

* 본 예산 기준

10)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작성 부서	농업기반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송영호 사무관	044-201-1862	재난안전관리 단계
			황보현 주무관	044-201-1853 hbhyun84@korea.kr	예방

- ◇ 노후·파손 등으로 태풍·해일·지진 등에 취약한 국가지방관리 방조제를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재해예방 도모
* 방조제관리법 제7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방조제 개보수 완료 지역 염해피해 해소율(%)	100.0	100.0	100.0	(최근 5년 준공지구 수해면적 - 침수피해면적)/(최근 5년 준공지구 총 수해면적)*100 * 시·도 행정조사로 산정	보통

□ 주요내용

- 방조제 피복석 및 제방 보강, 배수갑문 교체·보수, 권양기 등 부속시설 교체·보수, 파라펫 설치·보수 등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시행지구 지구별 예산배정, 연차별계약, 착공, 신규지구 선정	1,2,3월
2/4분기	• 방조제 개보수 공사 시행	4,5,6월
3/4분기	• 방조제 개보수 공사시행, 설계변경(필요시)	7,8,9월
4/4분기	• 방조제 개보수 공사시행, 연도말 검정·정산, 차년도 시행 예정지 조사	10,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218,705	37,000	40,890	43,463	51,238	46,114	47,497	48,447	48,932	

11) 수리시설개보수

작성 부서	농업기반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강대일 사무관	044-201-18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신주옥 주무관	044-201-1861 sjuoek@korea.kr	예방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 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108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수리시설개보수율(%)	82.5	83.6	84.8	완료지구/대상지구×100	보통
용수절감률(%)	58.1	61.6	64.8	용수절감량/대상용수절감량×100	보통

□ 주요내용

- 노후·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중요 구조물 보수·보강
- 풍수해, 지진, 가뭄 등 재해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및 확충
 - 저수지 홍수방류시설 설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등 추진
 - 배수장 수중펌프 교체, 제진기 및 2중화선로 설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시행계획 수립, 예산배정, 신규지구 선정	1,2,3월
2/4분기	● 개보수 공사 시행, 시설물 안전진단 시행	4,5,6월
3/4분기	● 개보수 공사 시행, 시설물 안전진단 시행	7,8,9월
4/4분기	● 개보수 공사 시행, 연도말 검정·정산, 차년도 시행 예정지 조사	10,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수리시설개보수	2,636,917	474,300	460,000	558,018	558,136	606,463	645,238	688,250	705,255	

12) 수리시설유지관리

작성 부서	농업기반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영민 사무관	044-201-1852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경화 주무관	044-201-1854 kk3841@korea.kr	예방

-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예방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제18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수해면적 대비 가뭄면적 비율(%)	-	-	1.25	(가뭄 빈도 3년 관개면적 / 농어촌공사 관리면적) × 100	보통

□ 주요내용

- 노후·손괴된 수리시설의 수선·정비로 자연재해 예방
 -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보 등 노후·손괴된 수리시설*의 점검·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급·배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481천ha 내 수리시설 14천개소, 용·배수로 10만km
 - 집중호우, 태풍에 의한 붕괴, 유실, 침수 등에 대비하여 누수, 파손, 노후된 시설을 수선·보수*하고, 사후 긴급복구 실시
 - * '20 예산안에 수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150,000백만원 편성
- 가뭄 및 폭염 대비 안정적인 용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한 가뭄대책 실시
 - 영농기 가뭄 및 폭염에 대비하여 용수확보를 위한 가뭄대책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시행계획 수립, 영농기 대비 수리시설 점검·정비	1~3월
2/4분기	● 영농기 비상급수 실시 및 지속적인 수리시설 점검·정비	4~6월
3/4분기	● 집중호우·태풍 대비 안전관리 및 가뭄지역 용수대책 특별관리	7~9월
4/4분기	● 연도말 정산 및 차년도 수리시설 관리계획 수립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수리시설 유지관리	768,732	154,700	162,232	150,000	150,000	151,800	156,354	159,481	161,076	

13) 농촌용수개발(다목적농촌용수개발)

작성 부서	농업기반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재천 서기관 장동수 주무관	044-201-1858 044-201-1859 chang0425@korea.kr	재난안전관리 단계 예방
-------	-------	--------------	--------------------	--	-----------------

- ◇ 수리시설 설치를 통한 농어촌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환경개선 도모
- ◇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지역에 배분하여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농촌용수 급수율(%)	76.8	80.3	83.4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급수면적(누계)/사업대상 면적 × 100 * 대상면적 136.4천ha	보통

□ 주요내용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환경개선 도모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21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집행	1,2,3월
2/4분기	• '21년 기본조사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착수지구 선정	4,5,6월
3/4분기	• 공사 추진상황 점검	7,8,9월
4/4분기	• 연도말 정산	10,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농촌용수개발	1,771,830	365,970	381,287	350,200	357,407	316,966	326,475	342,580	346,335	

14) 가뭄대비용수개발

작성 부서	농업기반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공석	044-201-1857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형대 주무관	044-201-1863 khd7924@korea.kr	대비·대응

◇ 가뭄발생지역 용수대책비 긴급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 최소화

* 농업존정비법 제108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가뭄발생피해방지율	100%	93%	94%	{1-(가뭄피해면적 / 가뭄 발생전체면적)} × 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목적) 가뭄피해(발생)우려지역에 용수대책비* 지원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도모

* 관정·뚝방 개발, 저수지 준설, 양수저류, 하상굴착, 살수차 운용 등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국고80%, 지방비 20%)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4/4분기	가뭄발생지역 대책비 지원(관정, 저수지 준설, 양수장 등)	연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가뭄대비용수개발	99,400	52,500	12,100	11,700	11,300	11,800	12,154	12,397	12,521	

15) 축산식품안전관리

작성 부서	농림축산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영숙 사무관	054-912-0417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은혜 주무관	054-912-0419 mission11@korea.kr	예방

◇ 생산단계 축산물안전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입 축산물 유통이력제 관리로 유통질서 확립 · 소비자 알권리 제공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4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8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도축장,집유장 감시 단속 비율(%)	43.7	43.8	43.8	(도축장,집유장 감시.단속 개소수/ 전체 도축장, 집유장 개소수) × 100	매우높음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활용 증가율(%)	9.9	9.3	9.4	(금년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조회 건수 - 전년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조회건수) / 전년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조회건수]×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제 관리 · 지도
 - 수입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 관련 이력제 점검 · 홍보, 이력제 상담 콜센터 공공요금 및 인력(9명) 운영 등
(‘20) 768백만원 → (‘21) 789 (증 21)
- (정밀검사) 미생물 · 잔류물질 실험실 검사 재료비, 실험보조 인력 운영(8명) 및 내용연수 경과 장비 교체 등
(‘20) 1,118백만원 → (‘21) 1,127 (증 9)
- (위생관리) 생산단계 도축장 · 집유장 위생 · 안전관리 지속 추진
(‘20) 293백만원 → (‘21) 297 (증 4)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연간 축산물 위생감시, 수입축산물 이력제 관리 추진계획 수립	계획수립(1/4분기)
2/4분기	• 소관 사무별 HACCP 제도 운영, 위생감시 등 업무 수행 •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 등 점검	HACCP 조사평가, 검증 (5~11월)
3/4분기	• 소관 사무별 HACCP 제도 운영, 위생감시 등 업무 수행 •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 등 점검	수입축산물 이력제 점검·교육(연중)
4/4분기	• 당해연도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추진결과 취합	결과보고 (연말·차년초)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축산식품 안전관리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0,581	1,739	2,540	1,910	2,179	2,213	2,279	2,325	2,348	
유통이력관리	4,016	749	957	753	768	789	819	839	862	
정밀검사	5,093	702	1,291	864	1,118	1,127	1,163	1,163	1,163	
위생관리	1,462	288	292	293	293	297	297	323	323	

16) 축산물 HACCP 지원

작성 부서	농축산물 위생품질 관리팀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병용 사무관	044-201-2975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준민 주무관	044-201-2977 goodwilllll@korea.kr	예방

-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축산농장 등에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일관된 축산물 HACCP 적용 식품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및 같은 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축산물HACCP컨설팅 지정률(%)	95.7	92.0	92.0	{축산물 HACCP 지정 인증 건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대상 건수 - 축산물 HACCP 지정 신청 건 중 민원 처리중인 건)} × 100	보통

□ 주요내용

- (HACCP컨설팅) HACCP 인증 희망 농가 및 의무작업장 대상 컨설팅 지원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 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영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현장기술지도) 인증농가의 운용능력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HACCP 운용이 미흡하고 현장 기술지원이 요구되는 농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기술지도 실시
 -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국비 100%)
- (조사·평가·교육·세미나·홍보) 언론 기고, 홍보물 제작·배포, 간담회 개최, 축산박람회 내 홍보관 운영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홍보 추진
 -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국비 100%)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시달	2월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계획 수립	3월
2/4분기	• 생산단계 HACCP 기술지원 및 검증 계획 수립	6월
3/4분기	• 생산단계 HACCP 활성화 홍보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7월
4/4분기	•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수행업체 보수교육 실시	12월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개선(안) 마련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8,167	1,650	1,650	1,650	1,650	1,567	1,614	1,646	1,663	
HACCP 컨설팅	5,517	1,120	1,120	1,120	1,120	1,037	1,084	1,116	1,133	
현장기술지도	1,60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조사·평가·교육· 세미나·홍보	1,05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17) 농산물안전성조사 사업

작성 부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영석 사무관	054-429-4135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미향 주무관	054-429-4138 iolove@korea.kr	예방

- ◇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강화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농가소득 향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제6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적합률(%)	98.8	97.0	98.0	100-(안전관리 조사건수-적합건수/적합건수)*100	보통

* '19년 목표: 96.0%(실적 98.8%)

□ 주요내용

- 안전성조사 상습 위반 농가를 파악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제 강화
- 농식품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형 안전성조사 추진
- 학교급식 등 국민적 관심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 추진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불안감 해소
-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21.2월
2/4분기	● 하절기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21.6월
3/4분기	● 추석대비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21.9월
4/4분기	● 김장철 재료(배추, 건고추 등) 안전성 특별조사	'21.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농산물안전성조사	113,744	20,051	23,267	23,590	23,302	23,534	24,976	25,725	26,497

18)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작성 부서	농축산물위생 품질관리팀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병용 사무관	044-201-2975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창현 주무관	044-201-2976 Lch0111@korea.kr	예방

- ◇ 축산물 안전관리의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축산물위생 안전검사운영을 지원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적합률(%)	신규	신규	99이상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과 미생물 모니터링 부적합수/검사건수)×100]	높음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신규	신규	35.00	[소·돼지 이상(폐기) 보고건수 / 소· 돼지 도축검사 두수] × 100	보통

□ 주요내용

- (축산물검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 향상 및 국민보건 증진
 - 잔류물질, 미생물 등 축산물검사를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 (도축검사)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포유류·가금류)에 대한 생체·해체검사를 통해 식육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추진
 - 도축 과정에서 가축 및 식육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등 도축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토록 함
 - 도축검사관(지자체 공무원) 및 도축검사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도축검사 교육(신규·보수) 등을 지원함으로써 검사 역량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21년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사업 시행지침 수립 • '21년 도축검사교육 추진 계획 수립	1~2월
2/4분기	• 분기별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결과 취합·분석 • 도축검사원 신규자교육 및 정기교육 운영	4~6월
3/4분기	• 분기별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결과 취합·분석 • 도축검사원 신규자교육 및 정기교육 운영	7~9월
4/4분기	• 분기별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결과 취합·분석 • '22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96,857	15,472	20,408	17,941	22,723	20,313	20,922	21,341	21,554	
◦ 재료비	4,798	2,036	500	1,262	500	500	-	-	-	
◦ 여비	87	18	18	18	18	15	-	-	-	
◦ 도축검사원 운영비	9,382	1,741	1,741	1,963	1,905	2,032	-	-	-	
◦ 도축검사 교육	3,250	650	650	650	650	650	-	-	-	
◦ 도축검사원 인건비	48,249	8,675	9,035	9,746	10,274	10,519	-	-	-	
◦ 축산물검사비	11,890	672	2,064	2,416	2,922	3,816	-	-	-	
◦ 축산물검사장비	19,201	1,680	6,400	1,886	6,454	2,781	-	-	-	

19)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작성 부서	재해보험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임채홍 사무관	044-201-1792	재난안전관리 단계
			강혁수 주무관	044-201-1797 august18th@korea.kr	대비·대응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필요

*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1항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가여도
농업인안전보험가입률	64.8	65.0	66.5	(당해연도 보험가입자 수 / 보험가입대상 농림업경제활동 인구 수) × 100	높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농업인·농기계('96년~), 등화장치('15년~)
- 사업규모 : '20년 가입목표 기준 농업인 845천명, 농기계 105천대 가입
- 사업시행방법 : 농업인·농기계(민간보조), 농기계등화장치(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업인(NH농협생명), 농기계(NH농협손해보험),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지자체)
- 사업 수혜자 :
 - (농업인)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농업법인 종사자
 - (등화장치) 경운기 또는 트랙터 등을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심의·확정	1월
2/4분기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개선협의회 개최	4월
3/4분기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개선협의회 개최	7월
4/4분기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개선협의회 개최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60,472	59,295	59,525	71,202	83,415	87,035	83,415	83,415	83,415	

20) 농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사업 포함)

작성 부서	재해보험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정연 사무관	044-201-1796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은선 주무관	044-201-1793 tjs419@korea.kr	사고복구

◇ 자연재해 등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 피해를 보험원리를
이용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기여

* 농어업재해보험법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38.9	35.0	36.0	보험가입면적/보험대상면적 ×100	높음

□ 주요내용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사업기간) '01 ~ 계속(가축 '97 ~)

○ (사업내용)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지원(국고 50%)

* 지자체에서 25~40%(약 평균 30%) 지원, 농가 보험료 부담은 10~25% 수준

○ (대상품목) '20년 83품목(농작물 67, 가축 16)

* ('01) 5(농작물2+가축3) → ('17) 69(53+16) → ('18) 73(57+16) → ('19) 78(62+16)

○ (사업시행) 농작물(농협손보), 가축(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심의·확정	1월
2/4분기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선협의회 개최	4월
3/4분기	• 가축재해보험 상품개선협의회 개최	7월
4/4분기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선협의회 개최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2,085,724	286,995	303,110	381,786	591,262	522,571	665,235	721,308	1,005,007	
농작물재해보험	1,567,992	216,176	232,836	241,740	471,662	405,578	503,731	530,231	780,248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포함
가축재해보험	471,596	62,818	63,425	120,625	112,235	112,493	154,247	182,320	215,502	
농업수입보장보험	35,384	4,649	5,149	17,721	5,365	2,500	5,257	5,257	5,257	
위탁기관운영비	3,352	3,352	-	-	-	-	-	-	-	‘18년 별도 세부 사업으로 분리
가축질병치료보험	7,400	-	1,700	1,700	2,000	2,000	2,000	3,500	4,000	

21) 재보험금

작성 부서	재해보험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임채홍 사무관	044-201-1792	재난안전관리 단계
			강혁수 주무관	044-201-1797 august18th@korea.kr	대비·대응

◇ 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재보험금 적기지급률	100%	100%	100%	Σ약정기한내 청구 재보험금 지급액/Σ청구 재보험금	보통

□ 주요내용

- (목적) 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기금의 용도))
- (사업기간) '05 ~ 계속
- (지원조건) 농작물재해보험 손익분담방식에 따른 정부 부담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 140% 초과시
- (사업시행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4/4분기	• 재해시 재보험금 즉시 지급	연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0)	'17	'18	'19	'20	'21	'22	'23	'24	
재보험금	515,188	53,837	10,000	351,351	50,000	50,000	92,100	94,800	97,500	

22) 재해대책비, 23) 재해대책비(융자)

작성 부서	재해보험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강승규 서기관	044-201-1794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학철 주무관	044-201-1795 hake8100@korea.kr	복구

-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및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시, 복구소요액의 일부를 농업인 및 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영농의욕 고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가능도
농업재해 사후복구 지원 강화	100%	100%	100%	(지자체 복구지원 요청 후 20일 내 복구계획 심의.확정 및 국비 지자체 재배정완료 건수 / 전체 복구계획 확정 건수)×100	보통

□ 주요내용

- (목적)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저수지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영농활동 도모
- (추진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조건)
 - 재해대책비
 - * 보상금 : 국비 24.5~70%(농림시설 24.5%, 대파대 35%, 농약대 70%)
 - *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50~100%(국가관리 100%, 농어촌공사관리 70%, 지방관리 50%)
 - 재해대책비(융자) : 30~70%
 - * 금리 1.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4/4분기	• 국고지원 대상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비 지원	연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444,452	76,500	76,500	84,264	78,688	128,500	128,500	128,500	128,500	
재해대책비	301,952	48,000	48,000	55,764	50,188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재해대책비(음자)	142,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

재난안전 관련 법령, 안전관리 규정

□ 관계법령

법령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방역정책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대상에 낭충봉아부패병 포함 등	방역정책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 등	방역정책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살처분보상금 평가반원 추가, 보상금 산정 기준 및 방법 일부 변경	구제역방역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재해보험정책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해보험정책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규정	재해보험정책과
방조제관리법	자연재해 및 노후·파손 등으로부터 방조제 보수·보강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농업기반과
농어촌정비법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확보	농촌정책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식육축산물매가공업자 이력관리 이행대상자 추가 등	축산경영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유에 대한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3

재난안전관리 주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2 가축질병 비상연락망

① 농림축산식품부

기관명	담당부서	전 화	팩 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044-201-2501	(fax) 044-868-0628
		044-201-2511	
		044-201-2522	
		044-201-2523	
	구제역방역과	044-201-2531	(fax) 044-868-0469
		044-201-2532	
		044-201-2533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1	(fax) 044-863-9210
		044-201-2555	
		044-201-2556~7	

② 유관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전 화	팩 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4385	02-770-4887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실	02-770-7862~7865	02-770-4760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	044-205-6153	044-205-8947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2-2100-8204	02-2100-7995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37	02-2110-0373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5~6	02-748-5778
	재난상황실	02-748-3183	02-748-5795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1-2508	044-202-39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과	044-203-2910	044-203-3478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6~7	044-201-7189
	생물다양성과	044-201-7287(7250)	044-201-7261
	환경보건연구과	032-560-7140	032-568-2036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043-719-7212(7206)	043-719-7219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054-912-0366~7	054-912-0383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3	042-481-7839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02-3150-3657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468(2368)	032-835-2968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재해대응과	063-238-1054	063-238-1780
	가축질병방역과	063-238-7228	063-238-7214

③ 광역시도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52 [Fax] 2133-0796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5121 [Fax] 888-4979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21(3423) [Fax] 803-3439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4(4375) [Fax] 440-8663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81~2 [Fax] 613-3969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820(3822) [Fax] 270-3789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0(2932) [Fax] 229-29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축산과	044-300-4442(4446) [Fax] 300-4429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2(3483) [Fax] 8030-3479
강원도	동물방역과	033-249-2655(2688) [Fax] 249-4206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043-220-6551(6552) [Fax] 220-3749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2545) [Fax] 635-3057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063-280-2658(2652) [Fax] 280-2639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061-286-6570(6571) [Fax] 286-4787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054-880-3441(3445) [Fax] 880-3439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055-211-6562(6573) [Fax] 211-651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51(2152) [Fax] 710-2129